

요코하마시 개호 보험 종합 안내 책자

2021 년도판

ハンガル



요코하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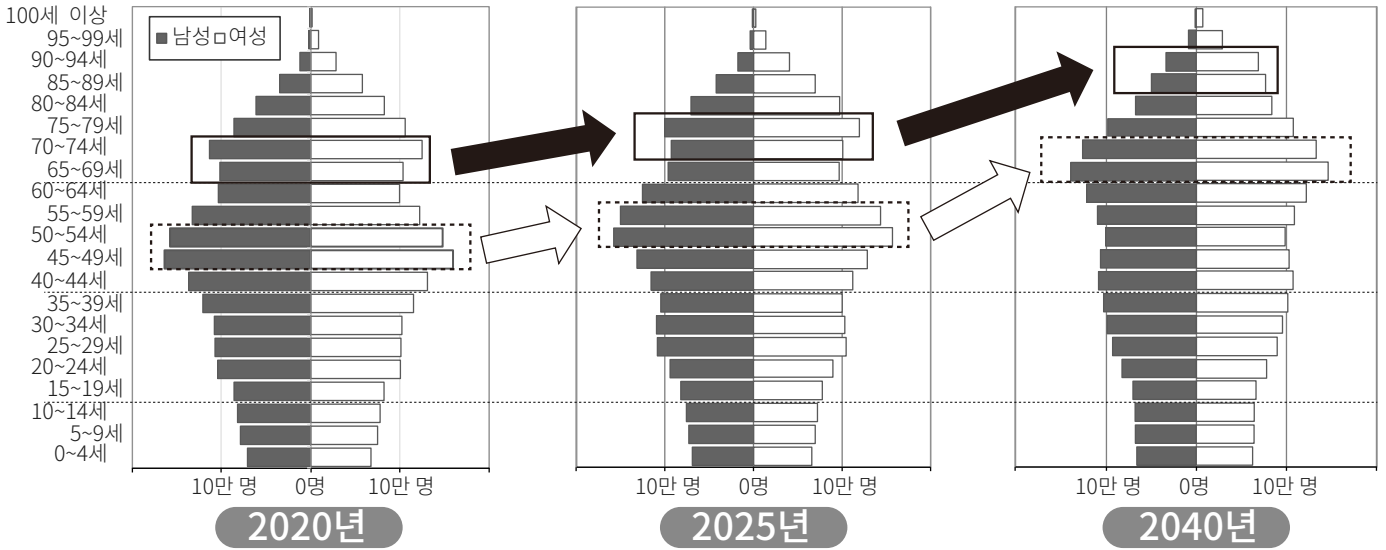
총 목차

요코하마 지역 포괄 케어 계획	3
개호보험제도의 구조	5
개호보험 대상자	6
보험료 안내	7
서비스 이용 순서	11
이용 가능한 서비스	17
서비스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30
개호보험 이외의 서비스	39
고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43
문의	44
고령자 여러분을 위한 개호 예방·건강 증진 서비스	45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래상과 요코하마형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 미래의 요코하마시 고령자 상황

2025년에는 단카이 세대가 만 75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가 되며, 2040년에는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2040년에는 3명 중 한 명이 고령자가 되는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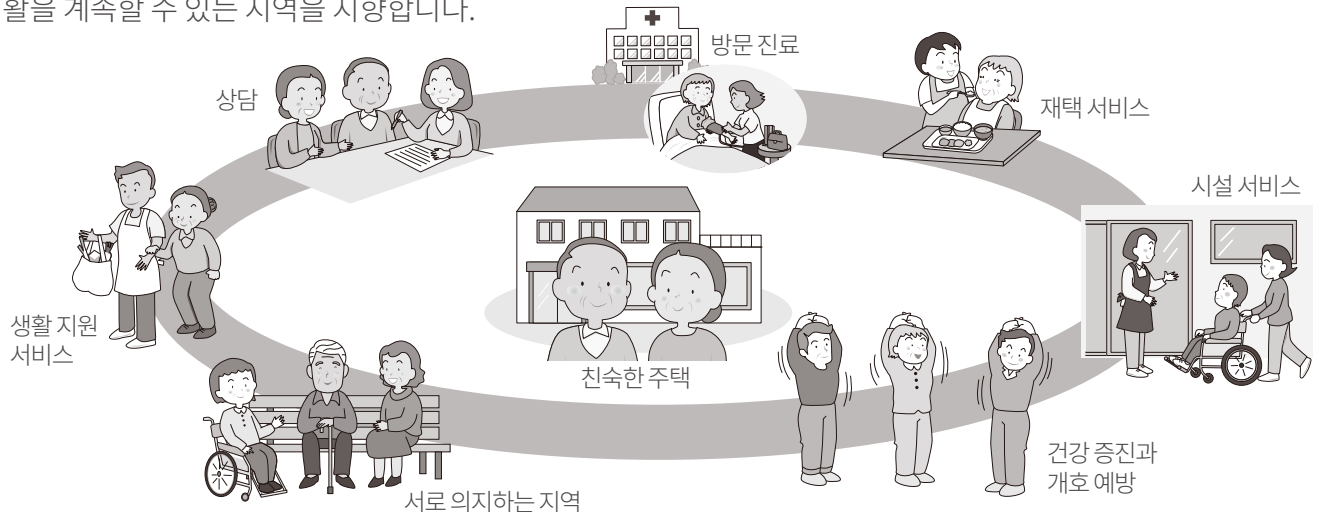


▶▶ 요코하마형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 요코하마시가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래상 ●

"지역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개호와 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고령자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개호와 의료 요구의 대폭 증가 및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을 목표로 요코하마형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지역 만들기 및 의료와 개호 전문직의 연계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노후의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어 모든 고령자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다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역을 지향합니다.



~ ~ ~ ~ ~ 요코하마형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란 ~ ~ ~ ~ ~

요코하마 지역에서 '개호·의료·개호 예방·생활 지원·생활'이 일체화되어 제공되는 포괄적인 지원·서비스 제공 체제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① '지역 케어 플라자'를 중심으로 일상생활권역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② 활발한 시민 활동과 협동합니다.
- ③ '개호 예방, 건강 증진', '사회 참여', '생활 지원'을 일체적으로 추진하여 건강 수명의 연장으로 연결시킵니다.
- ④ 의료, 개호의 연계 등 다직종 연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 ⑤ 고령자가 '지역을 지탱하는 일원'으로써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의료와 개호 등의 인재 확보 및 육성에 힘씁니다.

요코하마 지역 포괄 케어 계획 (계획 기간:2021년도~2023년도)

제8기 요코하마시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 개호보험 사업 계획, 치매 시책 추진 계획

이 계획은 고령자에 관한 보건복지 사업 및 개호 보험 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3년마다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카이 세대 전원이 만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및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만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을 염두에 두고 고령자 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서 책정하였습니다.



요코하마 지역 포괄 케어 계획

기본 목표

계획의 시책 체계

포지티브 에이징

~누구나가, 언제까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답게 있을 수 있는 요코하마형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사회 전체에서 만든다~

개호보험 사업 계획·고령자 보건복지 계획

I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과의 협동에 의해 개호 예방·건강 증진·사회 참여·생활 지원을 일체화하여 추진해서 개개인의 삶의 보람과 역할을 갖고 관계를 맺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II 지역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확충과 연계 강화를 목표로

의료,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안심하고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재택 생활을 지원하는 의료, 개호, 보건복지의 확충을 도모합니다.

III 요구와 상황에 맞는 시설과 주택을 목표로

일상 생활에서의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개별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설이나 생활 공간을 정비합니다.

VI 안심할 수 있는 개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대하는 개호 요구에 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①새로운 개호 인재 확보, ②개호 인재의 정착 지원, ③전문성 향상을 3개의 축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V 지역 포괄 케어 실현을 위해서

개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발신하며 적절한 서비스의 양을 확보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며 충실한 요코하마형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VI 자연 재해·감염증 대책

지진, 풍수해, 감염증 등 지역이나 시설의 생활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데에 대비하C 시설 등을 위한 방재 및 감염증 대책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합니다.

개호 서비스 양의 예상·보험료 설정

치매 시책 추진 계획

공생

치매를 내 일처럼 여기며, 주위 사람들과 지역의 이해와 협력하에 치매 환자 본인이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살아감으로 친숙한 지역 안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신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대비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의 이해, 증상을 깨닫고 적절한 의료·개호, 지속적인 사회와의 관계와 지역의 관심 등, 많은 사람이 치매에 대비하기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심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져도 의료 및 개호 등의 체제가 구축되어 적절하게 제공됨으로 본인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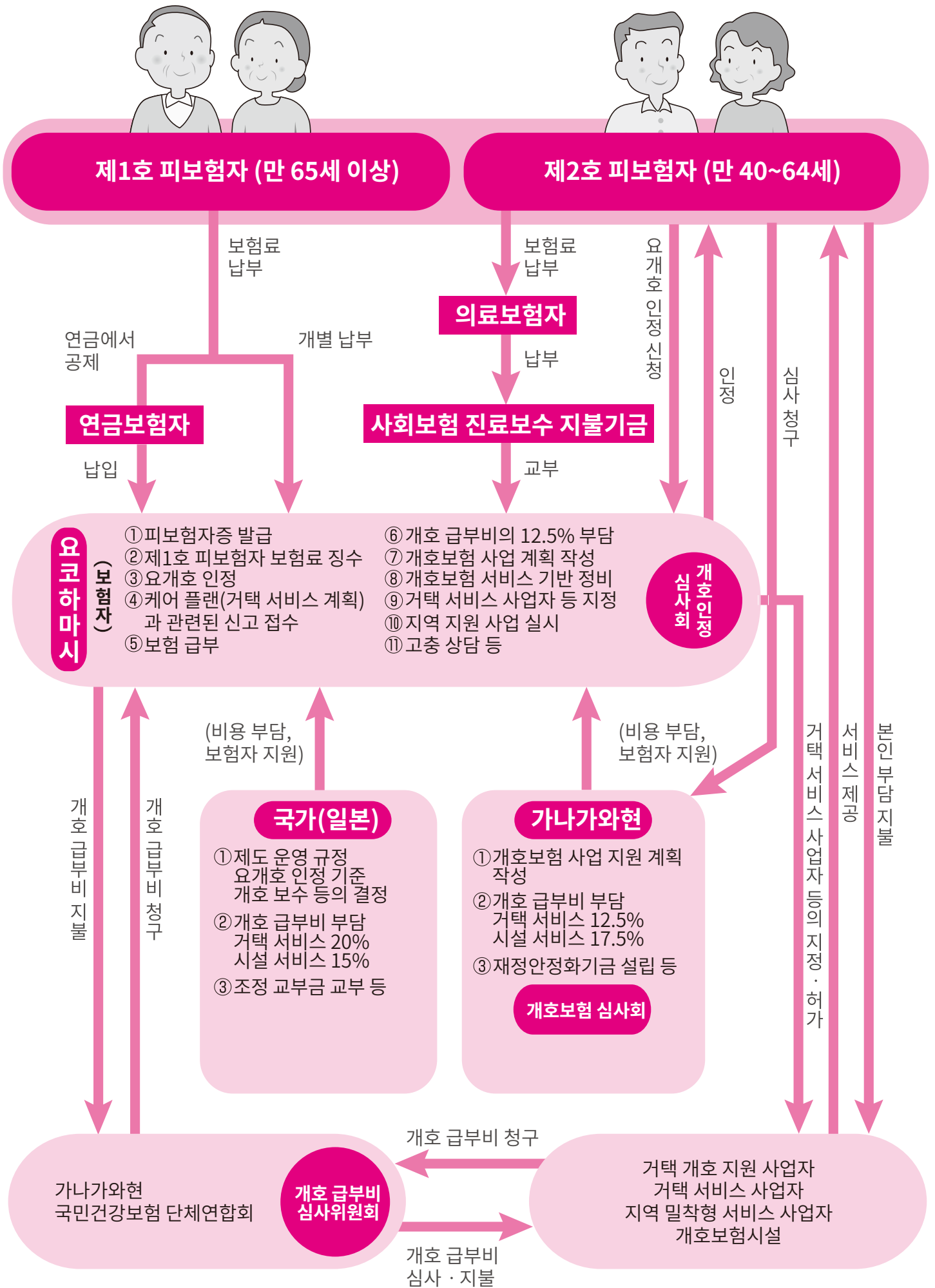
개호보험 제도의 기본 이념은 '존엄 유지'와 '자립 지원'

개호보험 제도는 개호 등이 필요한 사람의 존엄을 유지하고 능력에 따라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호보험 서비스는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서 능력에 따라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재활치료 등의 보건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보험자인 요코하마시는 개호보험 사업 계획을 책정하고 보험료의 징수, 요개호 인정, 보험 급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제도의 구조



만 65세 이상인 분 (제1호 피보험자)

만 65세를 맞이한 분(생일 전날)은 제1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개호가 필요할 때는 원인을 불문하고 요개호(지원) 인정 등을 거쳐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교부

전원에게 교부됩니다. 만 65세를 맞이하는 생일 전에 개호보험 피보험자증(개호보험증)을 보내 드립니다.

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시초선(市町村)에서 전입했거나 다른 시초선(市町村)으로 전출할 경우
- 주소 및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 개호보험증을 분실했거나 오손한 경우
-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생활 보호 등을 받은 경우(또는 받지 않게 된 경우)
- 시외의 개호보험 시설 등에 입소(입주)하여 주소가 변동된 경우 ※1



※1 개호보험시설 등에 입소(입주)한 분의 특례(주소지 특례)에 대해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에 가입한 분(피보험자)이 다른 시초선(市町村)에 소재한 아래의 시설 등에 입소(입주)함에 따라 주소가 변동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의 시초선(市町村)이 아닌 요코하마시의 피보험자로 구분됩니다.

<주소지 특례에 해당하는 시설 등>

- 특별 양호 노인홈,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개호 의료원
- 유료 노인홈 · 경비 노인홈 · 양호 노인홈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주택 가운데 유료 노인홈에 해당하는 시설

만 40~64세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분(제2호 피보험자)

만 40~64세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분이 제2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병(※2)으로 인해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 상황에 한해, 요개호(지원) 인정을 거쳐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증 교부

요개호(지원) 인정을 받은 분과 교부를 희망하는 분에게 발급됩니다.

※2 제2호 피보험자가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질병

아래의 16종류를 국가(일본)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 | | | | |
|------------------------------|--------------------------------------------|----------------------------------|-----------------------------------------|
| ① 암(※) | ⑦ 진행성 핵상 마비, 피질 기저핵 변성 및 파킨슨병 (파킨슨병 관련 질환) | ⑪ 다계통 위축증 | ⑮ 만성 폐색성 폐질환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등) |
| ② 류마티스 관절염 | ⑧ 척수 소뇌 변성증 | ⑫ 당뇨병성 신경 장애, 당뇨병성 망막증 및 당뇨병성 신증 | ⑯ 양쪽 무릎 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동반하는 변형성 관절증 |
| ③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 ⑨ 척추관 협착증 | ⑬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경색 등) | |
| ④ 후종인대 골화증 | ⑩ 조로증 (베르너 증후군) | ⑭ 폐색성 동맥 경화증 | |
| ⑤ 골절을 동반하는 골다공증 | | | |
| ⑥ 초로기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성 치매 등) | | | |

※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견해에 기반하여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함.

개호보험 적용 제외 시설

아래의 시설에 입소(입원)한 분은 입소(입원) 기간 중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 또는 보험연금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시설>

- 의료형 장애아 입소시설 · 지정의료기관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지정 병상) · 희망원 · 한센병 요양소 · 구호시설 · 노동재해 보상법에 규정된 시설 · 장애인 지원시설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따른 생활 개호 및 시설입소 지원의 지급 결정을 받은 분 등)
-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따른 요양 개호를 시행하는 병원(요양 개호에 따른 급부를 받고 입원한 분에 한함)

만 65세 이상인 분(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요코하마시가 3개년(2021년도~2023년도)의 개호 보험 서비스 급부액 등의 예상에 기반하여 산정하며, 조례 등으로 지정되어 확정됩니다.
- 보험료는 본인 및 주민표상 세대(*1)의 과세 상황, 본인의 전년 중의 합계 소득 금액(*2) 등에 따른 단계별 보험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매년 6월에 그 연도(4월~다음 해 3월)의 보험료액을 결정합니다. 보험료액을 결정한 후에 보험료액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는 보험료액을 재산정합니다.

기준액 : 연간 78,000엔 (월간 환산 6,500엔) ... 제6단계 보험료액입니다.

2021년도~2023년도(연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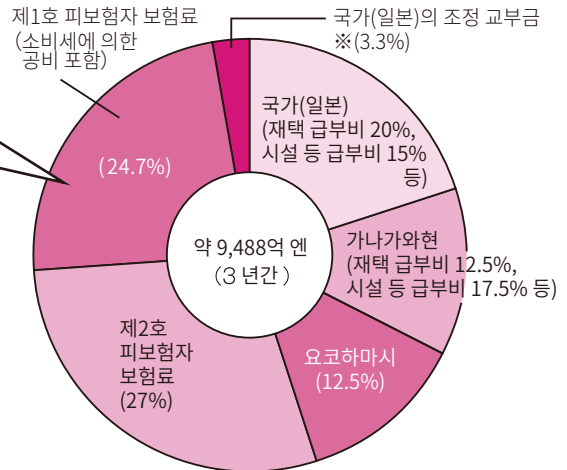
보험료 단계	대상자		비율	연간보험료액	
제1단계	· 생활보호 또는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 수급자 · 시민세 비과세 세대인 동시에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기준액X0.25	19,500엔 ^(※5)	
제2단계	본인이 시민세 비과세	동일 세대에 있는 분 전원이 시민세 비과세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3)'과 '합계 소득 금액(※4)'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X0.25	19,500엔 ^(※5)
제3단계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기타 합계 소득 금액' 합계가 연간 120만 엔 이하인 분으로 또한 제2단계에 속하지 않는 분	기준액X0.35	27,300엔 ^(※6)	
제4단계		상기 이외의 분	기준액X0.60	46,800엔 ^(※7)	
제5단계	동일 세대에 시민세 과세자가 있는 분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기타 합계 소득 금액' 합계가 연간 80만 엔 이하인 분	기준액X0.90	70,200엔	
제6단계 (기준액)		상기 이외의 분	기준액X1.00	78,000엔 <기준액>	
제7단계	본인이 시민세 과세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20만 엔 미만인 분	기준액X1.07	83,460엔	
제8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20만 엔 이상 160만 엔 미만인 분	기준액X1.10	85,800엔	
제9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 엔 이상 250만 엔 미만인 분	기준액X1.27	99,060엔	
제10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250만 엔 이상 350만 엔 미만인 분	기준액X1.55	120,900엔	
제11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350만 엔 이상 500만 엔 미만인 분	기준액X1.69	131,820엔	
제12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 엔 이상 700만 엔 미만인 분	기준액X1.96	152,880엔	
제13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700만 엔 이상 1,000만 엔 미만인 분	기준액X2.28	177,840엔	
제14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 엔 이상 1,500만 엔 미만인 분	기준액X2.60	202,800엔	
제15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500만 엔 이상 2,000만 엔 미만인 분	기준액X2.80	218,400엔	
제16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2,000만 엔 이상인 분	기준액X3.00	234,000엔	

- ※1 세대 ... 원칙적으로 4월 1일 현재 주민표상의 세대를 말합니다. 단, 4월 2일 이후에 시외에서 전입한 경우 및 연도 도중에 만 65세(제1호 피보험자)가 된 경우, 그 연도는 각각 전입일, 생일 전날의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합계 소득 금액 ... 세법상의 합계 소득 금액(전년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세법상 각종 소득 공제 및 상장 주식 등의 양도 손실과 관련된 이월공제 등은 적용하기 전의 금액)에서 공적 연금 등 공제액 등의 재검토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토지나 건물 매각과 관련된 단기·장기 양도 소득의 특별 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뜻합니다. 또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엔으로 계산합니다.
- ※3 공적 연금 등 수입액 ...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공적 연금 등(국민연금, 후생연금 등)의 수입을 말하며 비과세가 되는 연금(장애 연금·유족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기타 합계소득 금액 ... 합계 소득 금액(※2) 가운데 공적 연금 등과 관련된 잡소득(공적 연금 등 수입액에서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엔으로 계산합니다.
- ※5 소비세에 의한 공비를 투입하여 제1~2단계의 연간 보험료액을 35,100엔에서 19,500엔으로 경감합니다.
- ※6 소비세에 의한 공비를 투입하여 제3단계 연간 보험료액을 46,800엔에서 27,300엔으로 경감합니다.
- ※7 소비세에 의한 공비를 투입하여 제4단계 연간 보험료액을 50,700엔에서 46,800엔으로 경감합니다.

보험료 납부방법은 **특별 징수** 와 **보통 징수** 의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법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서비스의 재원
(2021년도~2023년도 예상)



특별 징수

연금이 연간 18만엔 이상인 분은 연금에서 보험료 금액이 공제됩니다.

- 연금 지급 달에 연 6회로 나눠 보험료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

- 노령(퇴직)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
- ※노령복지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징수

연금이 연간 18만엔 미만 등으로 특별 징수 대상이 아닌 분은 계좌 자동이체 또는 납부서로 개별적으로 납부합니다.

Point

개호보험료는 무엇에 사용되나요?

개호보험료는 개호가 필요한 분의 개호보험 서비스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 국가(일본)의 조정 교부금

개호를 받을 가능성이 큰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을수록, 또한 제1호 피보험자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기준액이 높아집니다. 조정 교부금은 이와 같은 시초선(市町村)의 노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일본)에서 시초선(市町村)으로 교부됩니다.

구분	특별 징수	연금에서 공제	짝수달의 연금 지급일에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보통 징수	계좌 자동이체 납부	매월 29일이 계좌 자동이체일입니다(2월은 말일). 계좌 자동이체일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 영업일이 계좌 자동이체일입니다.
납부서 납부		매월 말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영업일이 납부기한입니다.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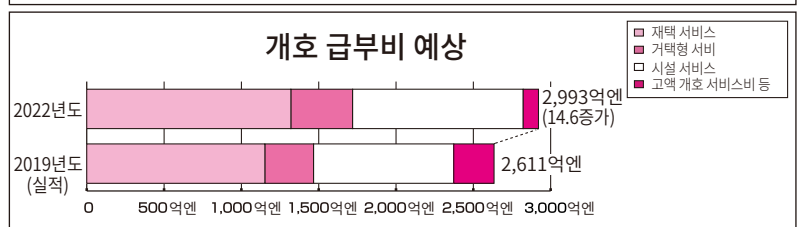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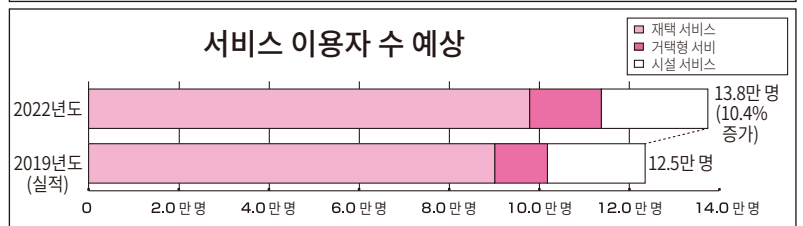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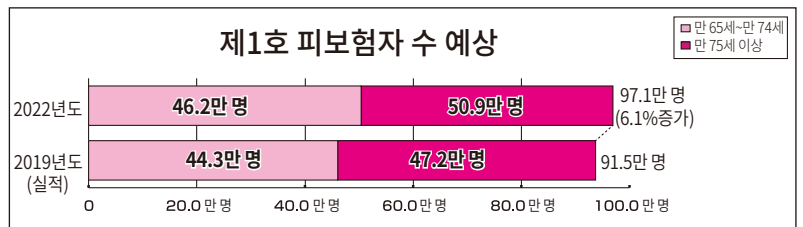
- 보통 징수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는 계좌 자동이체가 편리합니다.
- 신청은 계좌 자동이체 의뢰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시고 통장 신고인을 날인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십시오(의뢰서는 금융기관 또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있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는 금융 기관에 소속하신 뒤 약 2개월 후부터 시작됩니다. 자동이체가 시작될 때 별도의 엽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특별 징수 대상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2023년도 개호 보험료 개정에 대하여

고령자 가운데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호 보험 서비스의 비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2023년도 3년간도 고령화가 진행되어 보험료를 부담하는 전체 인원수도 늘어나지만, 그 이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보험료 단계가 제1단계~제4단계인 분은 개호 보험 재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공비와는 별도로 소비세에 의한 공비를 투입한 보험료 경감 조치가 실시됩니다.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호 서비스의 기반이 착실하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며 개호 예방의 노력 추진을 목표로 건강 증진 및 개호 예방을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감면

재해, 실업, 도산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개호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의 종류	대상자	감면 내용
재해	풍수해, 화재, 지진 등으로 가옥 등의 자산이 20% 이상 피해를 받은 분.	피해의 정도에 따라 4개월분 또는 6개월분을 면제합니다.
소득 감소	실업 또는 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분.	해당 연도 중의 예상 소득 금액 등을 바탕으로 감액합니다.
저소득	보험료 단계 제7단계 이하이며 일정 '수입 기준' 및 '자산 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분(생활보호 또는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은 제외).	제1단계 (공비에 의한 경감 조치 전)의 1/2의 상당액으로 감액합니다.

저소득자 감면 수입 기준 · 자산 기준

수입 기준	세대 전원*의 연간 수입 예상액이	
	단신자 세대	150 만엔 이하
	2명 이상의 세대	150 만엔에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5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
자산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세대 전원의 현금, 예저금, 유가증권 등 자산의 합계가	
	단신자 세대	350 만엔 이하
	2명 이상의 세대	350 만엔에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10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
	(나) 주거용 토지(200㎡ 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세대 전원'이란 기본적으로는 주민 등록으로 같은 세대로 등록된 사람 전원을 가리키나 다른 세대라도 동거해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Point

보험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십시오

보험료는 개호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십시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독촉장을 송부합니다.

또한, 납부가 독촉장의 지정기한을 지나면 지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서로 납부하는 분에게는 편리한 계좌 자동이체를 권장합니다.

만 40~64세인 분(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

[결정방법] 각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험자가 가입하는 제2호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납부방법] 의료보험의 보험료로서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보험료] 가입한 의료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의료보험의 보험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는 개호 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개호 보험 제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료(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법령에 기반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 . .

보험 급부 지급방법이 변경됩니다(상환 지불화)

-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일단 비용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 일단 지불한 비용은 구청에 신청하면 보험 급부분이 추후 환급됩니다.

1달에 10만 엔의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 상환 지불화가 된 경우*

- ① 상환 지불이므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100%인 10만엔을 지불합니다.
- ② 10만엔의 영수증, 서비스 제공 증명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 ③ 10만 엔의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고 구청에 보험 급부분(9만 엔) 환급 신청을 합니다.
- ④ 추후에 보험 급부분(9만 엔)을 환급받습니다.

*본인 부담 비율이 10%인 분의 사례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 . .

보험 급부가 일시 정지됩니다

- 상환 지불된 급부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조치가 단행됩니다.
- 또한, 체납이 계속되는 경우는 정지된 보험 급부에서 체납 보험료가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 . .

보험 급부액이 감액됩니다(이용자 부담 비율 인상)

- 보험료는 독촉장이 도착한 날의 다음 날 등(시효 기산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 시효로 납부할 수 없게 된 보험료가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보험 급부의 본인 부담 비율이 30% 또는 40%로 인상됩니다.
- 또한, 이 기간은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환급(34페이지) 및 방세·식비 부담 경감(35페이지)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의 본인 부담액은 고액 의료 고액 개호 합산제도(36페이지)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개호 2의 분의 평균적인 1년간 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 부담 사례(※)

1년간 본인 부담이 10%에서 30%가 되면...	
<p>재택 서비스 이용 시 (1년간의 개호보험 서비스 비용 약 120만엔) 본인 부담액은</p> <p>약 12만엔</p> <p>↓</p> <p>약 36만엔 (본인 부담 증가는 약 24만엔)</p>	<p>시설 서비스 이용 시 (1년간의 개호보험 서비스 비용 약 310만엔) 본인 부담액은</p> <p>약 31만엔</p> <p>↓</p> <p>약 93만엔 (본인 부담 증가는 약 62만엔) ※ 식비 등의 부담액은 제외합니다</p>

이처럼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본인 부담이 증대합니다.

이 사례는 4년간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시효로 2년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된 후에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본인 부담이 30%가 되는 기간은 1년간입니다.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이 일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에 따라 급부액 감액 기간이 단축됩니다.

※보험료 제2단계로 본인 부담 비율 10%의 분의 사례

재산 압류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으로 예저금, 생명보험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대 납부 의무자

납부방법이 보통징수인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및 배우자는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2호 피보험자가 의료보험을 미납한 경우

제2호 피보험자(만 40~64세의 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지급방법 변경과 아울러 보험 급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조치가 단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 부담 안내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사업과 서비스 이용의 흐름 (약어 : 종합 사업)

개호 보험 서비스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요지원1, 2이신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가운데 방문 개호(홈 헬프)·통소 개호(데이 서비스)는 '개호 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의 서비스로서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내용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사업 대상자는 방문 개호·통소 개호 이외의 개호 보험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중 일부 서비스는 요지원자·사업 대상자 때부터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1 요개호 인정을 받습니다

1. 신청을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에서 '요개호 인정' 신청을 합니다. 지역 포괄 지원센터(지역 케어플라자 등),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등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

-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서(창구에 있습니다.)
 - 다지고 있는 의료기관명, 의사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개호보험증(만 65세가 된 시점에서 교부됩니다.)
- ※제2호 피보험자(6페이지)인 경우는 가입한 의료보험의 보험증

2. 심신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인정 조사

※사전에 구청 및 위탁 사업자가 연락하고 조사원이 자택 등을 방문하여 본인과 가족에게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은 전국 공통인 74항목의 기본조사와 개황 조사입니다. ※조사원이란 구청 직원 및 사업소 등에 소속된 개호 지원 문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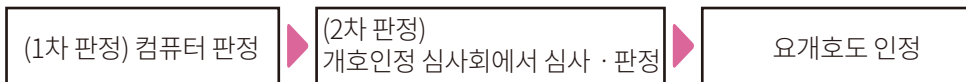
●주치의 의견서

신청 시에 지정한 주치의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주치의가 없는 경우는 창구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어느 정도 개호가 필요한지 심사하고 인정합니다

●심사·판정·인정

인정 심사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인정 심사회가 얼마나 개호가 필요한지 등을 심사·판정합니다. 구에서는 개호인정 심사회의 심사·판정에 따라 요개호도를 인정합니다.



다음 대상 요건(◆) 전부에 해당하시는 분에게는 간소화된 심사 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인정 결과 통지서와 개호보험증이 도착합니다

통지서와 보험증이 도착하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

요개호 상태 구분('요지원1·요지원2' '요개호1~요개호5' '해당 없음')
인정 유효기간 등(신규신청·구분 변경 신청인 경우는 3~12월, 갱신 신청인 경우는 3~48월)



◆인정 심사회 간소화 대상 요건에 대하여(2019년 2월 이후의 신청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①제1호 피보험자임.
- ②갱신 신청임.
- ③컴퓨터 판정 결과의 요개호도가 저번 인정 결과의 요개호도와 일치.
- ④저번 인정 유효기간이 12월 이상임.
- ⑤컴퓨터 판정 결과가 요개호1 혹은 요지원2인 분은 이번 상태 안정성 판정 로직에서 '인정'이라고 판정되어 있음.
- ⑥컴퓨터 판정 결과의 요개호 인정 등 기준 시간이 '1단계 중도한 요개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3분 이내(중도화 키워 3분 이내)'가 아님.

2 요개호 1~5의 인정을 받은 분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사업자와 계약합니다

● 재택 생활의 지속을 희망하는 경우

1. 케어 매니저를 결정합니다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에 소속된 케어 매니저가 케어 플랜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사업소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소에 소속된 케어 매니저가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사업소에 대하여 **24페이지** 선정할 때는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의 창구 및 지역 포괄 지원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 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에 대하여 **14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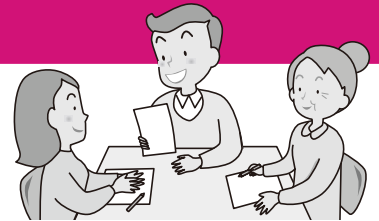
2. 케어 플랜 작성을 의뢰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케어 매니저와 상담합니다. 케어 매니저가 작성한 케어 플랜을 확인합니다.



3.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합니다

계약서, 중요사항 설명서 등에서 서비스 내용 등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마다 개별적으로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16페이지**



4. 利用服务

재택 서비스(방문
 계열·통소 계열·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서비스)
 는 18페이지~



●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1. 이용하는 시설을

희망하는 시설에서 서비스 내용 및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습니다.
 (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은 구청 및 지역 포괄 지원센터·고령자 시설·주택 상담 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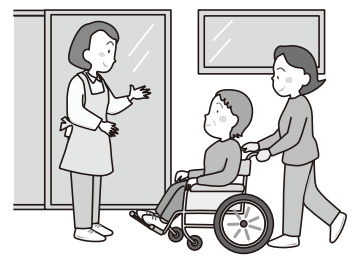
2. 입소를 신청합니다

※특별 양호 노인홈은 입소 신청 접수센터에서 상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개호도에 따라서 입소 요건이 다릅니다(**28** 페이지). 그 밖의 시설은 각 시설에 직접 신청합니다(**29페이지**).

※특별 양호 노인홈은 원칙적으로 요개호3 이상인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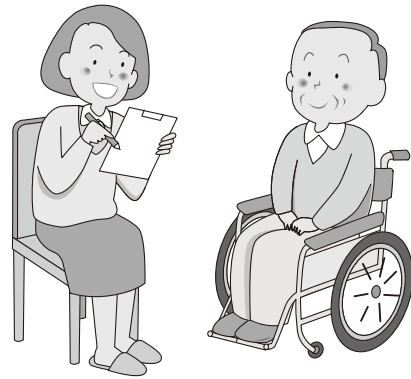
시설·거주
 계열
 서비스는 28
 페이지



거택 개호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케어 플랜을 작성하는 담당 케어 매니저를 결정합니다.

이용자와 가족의 심신 상태나 의향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택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하거나 각 서비스 사업자와의 이용 조정을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전액 개호 보험에서 지불되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거택 개호 지원사업자의 역할



~ 거택 개호 지원사업소를 선정할 경우의 포인트 ~

1.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개호를 모색해 준다.
2. 고령자 개호에 대해 확실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준다.
3. 지역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있다.

구마다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사오니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3 요지원 1·2의 인정을 받은 분, 사업 대상자(*)인 분

※사업 대상자란 요지원 상당의 분으로 기본 체크리스트에 의해 사업의 대상이 된 분을 말합니다.

1. 거주하시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지역 케어플라자 등)에 개호 예방 케어 플랜 작성을 의뢰합니다.

자신에게 친숙한 지역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 상담합니다. 지역 포괄 지원 센터는 개호 예방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지원합니다. (이용자가 문서로 동의한 후 지원을 개시합니다.)

개호 예방 케어 플랜 작성은 이용자의 의향에 따라 지정 거택 개호 지원사업소의 케어 매니저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그 경우 포괄 지원 센터가 작성한 개호 예방 케어 플랜을 확인합니다.)

지역 포괄 지원센터 안내 15페이지

2.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합니다

계약서, 중요사항 설명서 등에서 서비스 내용 등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마다 개별적으로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16페이지

3.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개호 예방 서비스는 18페이지

지역 포괄 지원센터 안내

지역 포괄 지원센터는 지역 밀착형 상담 창구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고령자께서 친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케어 플라자와 일부 특별 양호 노인홈에 지역 포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역할

1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개호 예방을 추진합니다.

개호 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생활 기능의 유지·향상이 필요한 분의 상담 지원, 요지원 1·2의 인정을 받은 분, 사업 대상자분의 개호 예방 서비스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2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개호보험 외에도 고령자분의 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비스와 기관(조직)으로 연결합니다.

지역 포괄 지원센터

보건사 등 · 사회복지사 · 주임 케어 매니저

3 고령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 외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고령자 학대 방지 등에 노력합니다.

4 지역의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케어 매니저, 개호보험 사업소,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의 고충이나 걱정은 무엇이든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에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방문 상담을 희망하실 때는 미리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신 후에 방문해 주십시오. 연말연시 기간 및 시설 점검일(월 1회)을 제외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개관하고 있습니다.
- 요지원 1·2의 인정을 받은 분에게는 인정 결과와 함께 담당 지역 포괄 지원센터 목록을 보내드립니다.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는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에서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는 이용하는 각 서비스별로 사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및 그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환하고 기재사항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경우는 구청의 창구 등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Point

계약서 및 중요사항 설명서의 확인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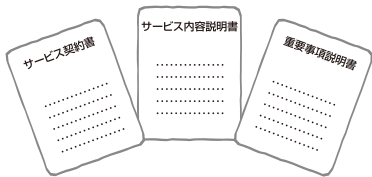
- **서비스 내용**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가?
→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계약서와는 별도로 설명서 등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 기간**
계약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의 계약 갱신에 대해서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가?
- **서비스 내용 설명**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제공 기록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거나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이용자 부담금**
이용자 부담금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가?
→ 법령으로 인정된 부담금 이외에 협력금, 사용료 등의 모호한 비용이 부과되어 있지 않은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지 않은가?
- **이용자 부담금 체납**
이용자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는가?
→ 즉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
- **이용자 해지권**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위약금이 필요하지 않은가?
- **서비스 이용 취소 (취소)**
예정된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고액의 취소료가 필요하지 않은가?
- **손해배상**
이용자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비밀 유지**
문서를 통한 동의가 없으면 이용자 및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고충 대응**
사업자는 고충에 대응하는 창구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대응을 규정하고 있는가?

계약서에 불합리한 명목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 범위는 30페이지로

● 서비스 계약서 ●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유효기간·지불·해지 등)이 기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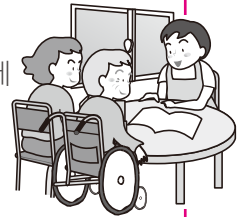


● 서비스 내용 설명서의 내용 ●

- 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 ② 제공 횟수와 일정
- ③ 이용자 부담과 지불방법
- ④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의 연락방법과 취소료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 중요사항 설명서의 내용 ●

- ① 사업자 개요
- ② 사업소 개요
- ③ 사업소의 직원체제
- ④ 영업시간
- ⑤ 이용자 부담
- ⑥ 상담 창구 등이 기재됩니다.



개호 보험 거택 서비스에는 이용 한도액이 있습니다.

개호 보험 거택 서비스에는 요개호도에 따른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단,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등에는 이용자 한도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택 요양 관리 지도' 이용 한도액 대상 외입니다.

요개호도 등		이용할 수 있는 단위 수	1개월당 이용 한도액*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실제 비용은 '단위 수 × 요코하마시의 지역 구분단가(10엔~11.12엔)'에 의해 산정됩니다. (18페이지 참조)
사업 대상자		5,032 단위	약 5만 엔~약 6만 엔	
요지원	요지원1	5,032 단위	약 5만 엔~약 6만 엔	
	요지원2	10,531 단위	약 11만 엔~약 12만 엔	
요개호	요개호1	16,765 단위	약 17만 엔~약 19만 엔	
	요개호2	19,705 단위	약 20만 엔~약 22만 엔	
	요개호3	27,048 단위	약 27만 엔~약 30만 엔	
	요개호4	30,938 단위	약 31만 엔~약 34만 엔	
	요개호5	36,217 단위	약 36만 엔~약 40만 엔	

이용 가능한 서비스

개호보험 서비스의 종류

개호보험 서비스는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과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요지원자의 이용 여부		종류	요지원자의 이용 여부	
자택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방문형 서비스)	방문 개호(홈 헬프)	○ ※2	방문형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 (통소(숙박)형)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간호 방문 *방문형 서비스	※1 ×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1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방문형+'통소(숙박)형' 서비스	※1 ○	
	방문 입욕 개호	○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방문형+'통소(숙박)형' 서비스	※1 ×	
	방문 간호	○		생애환영을 정비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렌탈)	※4 ○
	거택 요양 관리지도	○			특정 복지용구 판매	○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			주택 개수	○
시설에 다니며(숙박) 이용하는 서비스 (통소형 서비스)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정원 19명 이상	○ ※2	거주형 서비스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1 △ 요지원 2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소규모 데이 서비스) 정원 18명 이하	※1 ○ ※2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개호 제공 유료 노인홈 등)	○ ※3	
	요양 통소 개호(간호사의 관찰이 필요한 분의 데이 서비스)	※1 ×		지역 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개호 제공 유료 노인홈 등)	※1 ×	
	치매 환자 대응형 통소 개호(치매 환자 대응형 데이 서비스)	※1 ○	시설형 서비스	개호 노인 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홈)	×	
	통소 재활치료(데이 케어)	○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1 ×	
	단기 입소 생활 개호(복지 시설의 쇼트 스테이)	○		개호 노인 보건시설	×	
	단기 입소 요양 개호(의료 시설 등의 쇼트 스테이)	○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	
			개호 의료원	×		

※1 '지역 밀착형 서비스'입니다.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가능한 한 친숙한 자택 및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시민(시의 개호보험 피보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요개호이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방문 개호, 통소 개호,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는 '개호 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 서비스로 이행했습니다.

※3 입주 시 요개호이신 분만을 대상으로 한 시설도 있습니다.

※4 증상이 가벼운 분(요개호 1·요지원인 분)은 일부 이용 대상 외인 항목이 있습니다.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목록

[대상자 : 요지원 1~2, 사업대상자]

국가(일본)가 규정한 종류	요코하마시의 서비스 명칭	사업 개요
구 개호 예방 방문 개호·통소 개호에 상당하는 서비스	요코하마시 방문 개호 상당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 개호 예방 방문 개호에 상당하는 서비스(방문 개호원에 의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요코하마시 통소 개호 상당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 개호 예방 통소 개호에 상당하는 서비스(통소 개호 사업자 종사자에 의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완화된 기준에 의한 서비스(서비스 A)	요코하마시 방문형 생활 원조 서비스	꼭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에게는 방문 개호원 등에 더해 일정한 연수 수료자 혹은 입문적 연수 수료자가 청소, 세탁, 조리, 장보기 등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주민 주체에 의한 지원(서비스 B)	서비스 예방 방 조 사업 지원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자 등이 정기적으로 자택에 방문하여 청소, 세탁, 조리,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요코하마시 통소형 지원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자 등이 실시하는 지역 살롱 등에서 체조나 취미 활동 등 개호 예방으로 이어지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 지원 서비스	요코하마시 배식 지원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자 등이 정기적으로 자택에 방문하여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한 배식 등을 제공합니다.
	요코하마시 돌봄 지원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자 등이 정기적으로 자택에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지켜봅니다.
단기 집중 예방 서비스(서비스 C)	요코하마시 방문형 단기 예방 서비스	조기 개입으로 은둔형 외톨이 예방 및 개선, 사회 참여 촉진,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구 복지보건센터의 간호사, 보건사가 3~6개월의 단기간 방문하여 지원합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추어 운동 기능 유지·개선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지역 활동의 장 등 다양한 서비스 참여 지원 등을 시행합니다.

※5 요지원자·사업 대상자 때부터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요개호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18~29페이지 개호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대략적인 본인 부담액 기준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대략적인 본인 부담액 기준에는 10% 부담인 분을 사례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사업소의 체제 등에 따른 가산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택에서 이용하는 거택 서비스

요보호 1~5의 분

방문 개호(홈 헬프)

자택을 방문하는 홈 헬퍼(방문 개호원)에게 입욕·배설·식사 보조 등의 신체 개호, 청소·세탁·조리·장보기 등의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신체 개호 중심으로 이용	20분 미만	20분 이상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이후 30분마다
	186엔	278엔	441엔	644엔	94엔

신체 개호에 이어 생활 지원을 이용	20분 이상 45분 미만	45분 이상 70분 미만	70분 이상
	75엔	149엔	224엔

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용	20분 이상 45분 미만	45분 이상
	204엔	251엔

◇ 예를 들어 신체 개호를 중심으로 '30분 이상 60분 미만' 이용한 후에 연이어 생활 지원을 '20분 이상 45분 미만' 이용한 경우의 본인 부담은 516엔 (441엔 + 75엔 = 516엔) 입니다.

※ '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용'을 45분 이상 또는 '신체 개호에 이어 생활 지원을 이용'을 70분 이상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액은 정액이 됩니다.

※ 이른 아침 및 심야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본인 부담이 1.25~1.5배가 됩니다.

통원 등 승하차 보조

통원 시 승하차 보조와 운전을 홈 헬퍼(방문 개호원) 1명이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편도 110엔

◇운임은 별도 본인 부담입니다.

요지원 1·2의 분 사업 대상자 인 분

요코하마시 방문 개호 상당 서비스 (홈 헬프)

자택을 방문하는 홈 헬퍼(방문 개호원)에게 입욕·배설·식사 보조 등의 신체 개호, 청소·세탁·조리·장보기 등의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이용 횟수(1개월)	요지원1	요지원2 사업 대상자
주 1회 정도	1,308엔	1,308엔
주 2회 정도	2,612엔	2,612엔
주 2회를 초과하는 경우		4,145엔

요코하마시 방문형 생활 원조 서비스

자택을 방문하는 종사자(일정 연수 혹은 입문적 연수 수료자 등)에게 청소·세탁·조리·장보기 등의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이용 횟수(1개월)	요지원1	요지원2 사업 대상자
주 1회 정도	1,177엔	1,177엔
주 2회 정도	2,351엔	2,351엔
주 2회를 초과하는 경우		3,730엔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생활 지원은 이용자가 직접 가사를 하기 어렵고 가족 및 지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일상생활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호 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 ① '직접 본인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를 들어 가족분의 세탁, 조리·쇼핑, 방 청소, 손님 접대, 자가용 세차 등

② '일상생활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를 들어 마당 잡초 뽑기, 애완동물 돌보기, 대청소, 창문 유리 닦기, 가옥 수리, 페인트칠, 원예, 설날 등의 명절을 위해서 특별한 수고를 들여 만드는 음식 등

Point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의 계산방법은?

각 서비스 단위 수에 요코하마시의 지역 구분 단가(오른쪽 표)를 곱하고 그 10%를 본인 부담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표시가 있는 서비스의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은 30일간 이용한 경우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위 수 × 요코하마시의 지역 구분단가 × 0.1 = 본인 부담액

서비스 종류(예방, 지역 밀착 포함)	지역 구분 단가
거택 요양 관리지도 복지응구 대여	10 엔
통소 개호,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 ※개호 노인 복지시설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지역 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개호 의료원	10.72 엔
방문 재활치료, 통소 재활치료,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10.88 엔
방문 개호, 방문 입욕 개호, 방문 간호,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거택 개호 지원	11.12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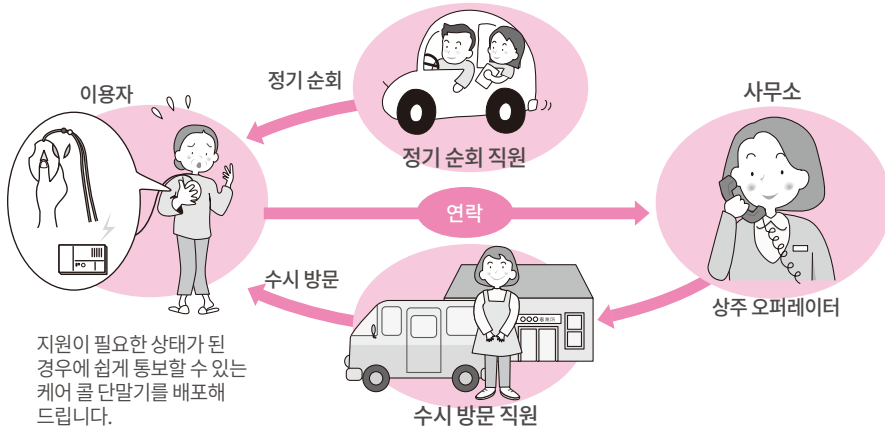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요지원 1·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밀착**

야간의 정기적인 순회에 의한 방문 개호 서비스와 더불어 수시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 자택을 방문합니다. 또 이용자의 통보에 따라 조정·대응하는 오퍼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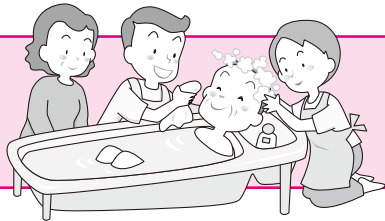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야간 방문 서비스(I)	오퍼레이션 서비스
	1개월 1,140엔
	정기 순회 서비스
	1회 430엔
수시 방문 서비스(I)	1회 654엔

요개호 1~5의 분

방문 입욕 개호



간호 직원과 개호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가져온 욕조로 입욕 개호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 회 당 1,402 엔

◇ 전신 입욕이 곤란하여 침상 목욕 및 부분 목욕을 이용할 경우는 1회당 1,261엔입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방문 입욕 개호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 회 당 948 엔

◇ 전신 입욕이 곤란하여 침상 목욕 및 부분 목욕을 이용할 경우는 1회당 853엔입니다.

요개호 1~5의 분

방문 간호

재택요양을 하는 분 가운데 통원이 어려운 경우에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택을 방문하는 간호사에게 건강 체크, 요양상의 보살핌이나 진료 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담 기준
(대략적인 본인 부담)

1회 제공시간	20분 미만 ※1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분 이상 ※2
서비스 구분					
방문 간호 스테이션	348 엔	523 엔	913 엔	1,251 엔	1,585 엔
병원 또는 진료소	295 엔	443 엔	638 엔	937 엔	1,270 엔

※1 '20분 미만'은 별도로 주 1회 이상 20분 이상의 방문 간호를 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조 및 심야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본인 부담이 1.25~1.5배가 됩니다.

※2 특별 관리 가산 대상인 분으로, 방문 간호의 소요 시간을 통산한 시간이 90분 이상이 되는 경우 산정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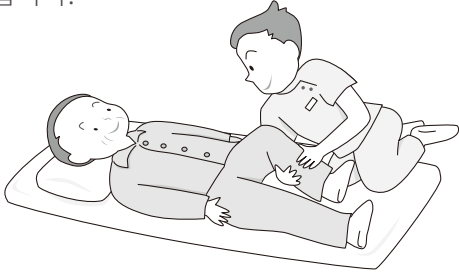
밀착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민(시의 개호보험 피보험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개호 1~5의 분

방문 재활치료

재택요양을 하는 분 가운데 통원이 어려운 경우에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자택을 방문한 이학 요법사, 작업 요법사, 언어청각사에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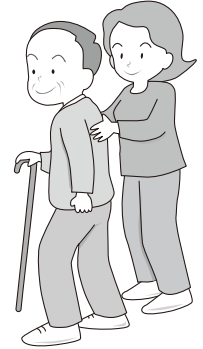
1 회 당 334 엔

◇이용 시 재활치료 실시 계획이 작성되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가 실시된 경우는 1회당 218엔이 가산됩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방문 재활치료

재택요양을 하는 분 가운데 통원이 어려운 경우에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자택을 방문한 이학 요법사, 작업 요법사, 언어청각사에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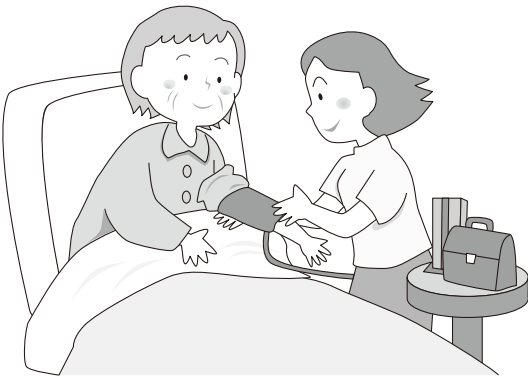
1 회 당 334 엔

◇이용 시 재활치료 실시 계획이 작성되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가 실시된 경우는 1회당 218엔이 가산됩니다.

요개호 1~5의 분

거택 요양 관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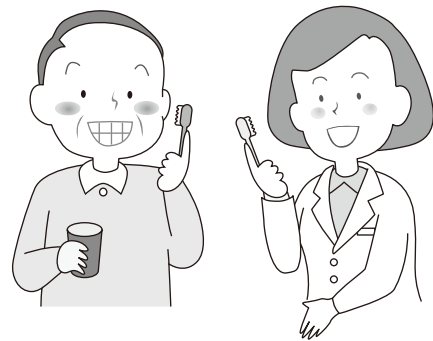
재택요양을 하는 분 가운데 통원이 어려운 경우에 자택을 방문한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등에 의한 영양상의 관리나 지도,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케어 매니저에 대한 케어 플랜 책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거택 요양 관리지도

재택요양을 하는 분 가운데 통원이 어려운 경우에 자택을 방문한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등에게 영양상의 관리나 지도,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지역 포괄 지원센터 등에 케어 플랜 책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이용 횟수	의사·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약사	약국의 약사	관리 영양사	치과 위생사 등
1 회당	514 엔	565 엔	517 엔	544 엔	361 엔
단일 건물 거주자 2~9명의 경우	486 엔	416 엔	378 엔	486 엔	325 엔
이용 한도 횟수	월 2회	월 2회	월 4회 ※1	월 2회	월 4회

※ 1 암 말기인 분 또는 중심 정맥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분은 주 2회 월 8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시설에 다니며(숙박) 이용하는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정원 19명 이상의 데이 서비스 사업소에 다니면서 기능 훈련 및 건강 체크, 입욕·식사 등 그 밖의 일상생활상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일당	요개호 1	요개호 2	요개호 3	요개호 4	요개호 5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714엔	844엔	977엔	1,111엔	1,246엔



- ◇ 일반적인 규모의 통소 개호 사업소를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의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송영 서비스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입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1일당 51엔이 가산됩니다.
- ◇ 이 밖에 영양 개선 서비스 및 구강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 가산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밀착

정원 18명 이하의 소규모 데이 서비스 사업소에 다니면서 기능 훈련 및 건강 체크, 입욕·식사 등 그 밖의 일상생활상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일당	요개호 1	요개호 2	요개호 3	요개호 4	요개호 5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837엔	989엔	1,145엔	1,304엔	1,458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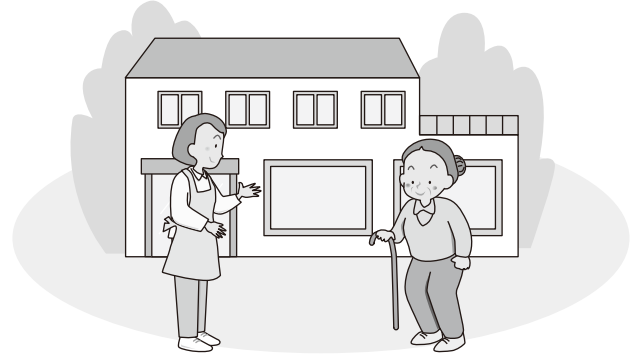


- ◇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송영 서비스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입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1일당 51엔이 가산됩니다.
- ◇ 이 밖에 영양 개선 서비스 및 구강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 가산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요지원 1·2의 분 사업 대상자 인 분

요코하마시 통소 개호 상당 서비스(데이 서비스)

데이 서비스 사업소에 다니면서 기능 훈련 및 건강 체크, 입욕·식사 등 그 밖의 일상생활상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이용 횟수(1개월)	요지원1	요지원2 사업 대상자
주 1회 정도	1,793엔	1,793엔
주 2회 정도		3,675엔



- ◇ 송영 서비스 및 입욕 서비스의 비용은 포함됩니다.
- ◇ 이 밖에 영양 개선 서비스 및 구강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 가산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요개호 1~5의 분(요지원 1·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밀착

난치병 등을 가진 중개호자 및 말기 암으로 상시 간호사의 관찰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기능 훈련 및 건강 체크, 입욕·식사 등 그 밖의 일상생활상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 당	(구분 없음) 13,605엔
-------	--------------------



◇ 신체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분이 한정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밀착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민(시의 개호보험 피보험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개호 1~5의 분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밀착**

치매 고령자분을 대상으로 지역 케어플라자 등에서 소수 인원으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입욕 및 식사 보조, 재활치료 및 레크레이션 등을 받는 데이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일당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요개호 1	1,115 엔
요개호 2	1,235 엔
요개호 3	1,356 엔
요개호 4	1,479 엔
요개호 5	1,599 엔



- ◇ 단독형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사업소를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의 대략적인 기준입니다(송영 서비스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입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1일당 52엔이 가산됩니다.
- ◇ 이 밖에 영양 개선 서비스 및 구강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 가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밀착** 통소 개호

치매 고령자분을 대상으로 지역 케어플라자 등에서 소수 인원으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입욕 및 식사 보조, 재활치료 및 레크레이션 등을 받는 데이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일당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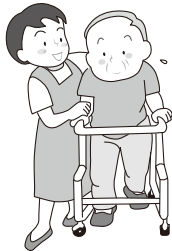
요지원 1	964 엔
요지원 2	1,076 엔



요개호 1~5의 분

통소 재활치료(데이 케어)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주치의가 필요를 인정한 경우, 개호 노인 보건시설, 병원·진료소 등에 다니면서 재활치료 및 입욕·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일당	요개호 1	요개호 2	요개호 3	요개호 4	요개호 5
7小时以上 8시간 미만	824엔	976엔	1,131엔	1,313엔	1,490엔



- ◇ 개호 노인 보건시설이나 병원·진료소 등 일반적인 규모의 통소 개호 사업소를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의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송영 서비스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입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1일당 55엔이 가산됩니다.
- ◇ 이 밖에 재활치료 실시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한 경우 및 영양 개선 서비스 및 구강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 가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통소 재활치료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주치의가 필요를 인정한 경우, 개호 노인 보건시설, 병원·진료소 등에 다니면서 재활치료 및 입욕·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아래의 선택적인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합니다.

이용료는 1개월 단위의 정액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1곳에 한합니다.

< 선택적 서비스의 종류 > · 운동기관 기능 향상
· 영양 개선 · 구강 기능 향상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공동적 서비스	운동기관 기능 향상 가산	영양 개선 가산	구강 기능 향상 가산
요지원 1	2,234 엔	245 엔	218 엔	169 엔
요지원 2	4,351 엔	245 엔	218 엔	169 엔



- ◇ '송영 서비스' 및 '입욕 서비스' 비용은 공통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밀착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민(시의 개호보험 피보험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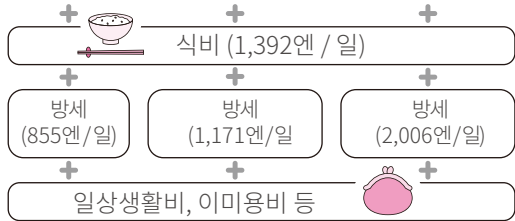
요개호 1~5의 분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복지시설에서의 쇼트 스테이)

가정에서 개호하기가 일시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에 복지시설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식사 및 옷 갈아입기, 입욕 등 일상생활 개호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체류하는 방(룸)의 종류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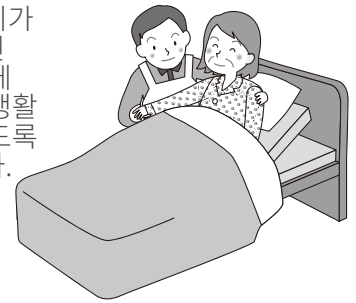
1일당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개인실
요개호1	649엔	649엔	758엔
요개호2	724엔	724엔	832엔
요개호3	802엔	802엔	912엔
요개호4	877엔	877엔	988엔
요개호5	951엔	951엔	1,062엔



요지원 1·2의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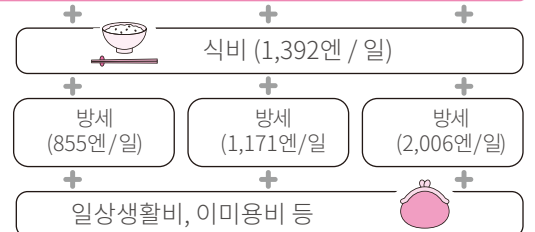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가정에서 개호하기가 일시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에 복지시설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생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일당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개인실
요지원 1	486엔	486엔	569엔
요지원 2	604엔	604엔	707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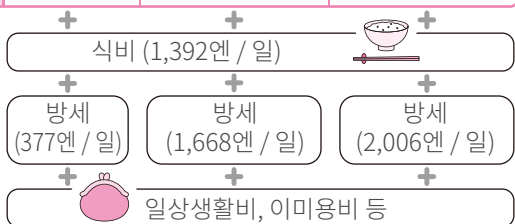
요개호 1~5의 분

단기 입소 영양 개호
(개호 노인 보건시설·병원 등에서 쇼트 스테이)

가정에서 개호하기가 일시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에 개호 노인 보건시설 및 의료시설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의사 및 간호사, 이학 요법사 등에게서 의학적 관리 아래 기능 훈련 및 생활 지원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체류하는 방(룸)의 종류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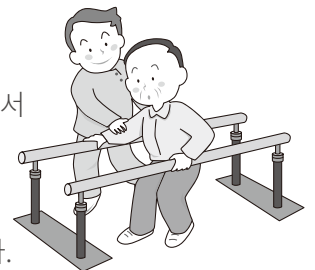
1일당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개인실
요개호1	887엔	807엔	893엔
요개호2	939엔	857엔	943엔
요개호3	1,007엔	923엔	1,011엔
요개호4	1,063엔	980엔	1,069엔
요개호5	1,121엔	1,036엔	1,125엔



요지원 1·2의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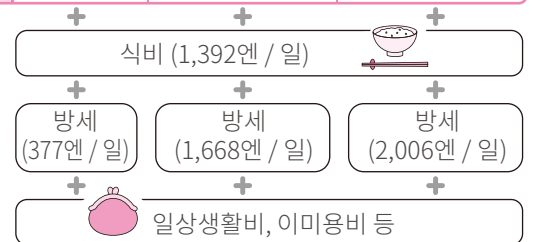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영양 개호

가정에서 개호하기가 일시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에 개호 노인 보건시설 및 의료시설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의사 및 간호사, 이학 요법사 등에게서 의학적 관리 아래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일상생활상의 지원 및 기능 훈련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일당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개인실
요지원 1	654엔	619엔	666엔
요지원 2	824엔	773엔	839엔



- ◇ 송영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편도198~201엔이 가산됩니다.
- ◇ 기저귀비는 개호보험에 포함됩니다.
- ※ 식비·방세는 국가(일본)가 제시하는 표준적인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35페이지).
- ※ 수입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한 식비 및 방세가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35, 38페이지).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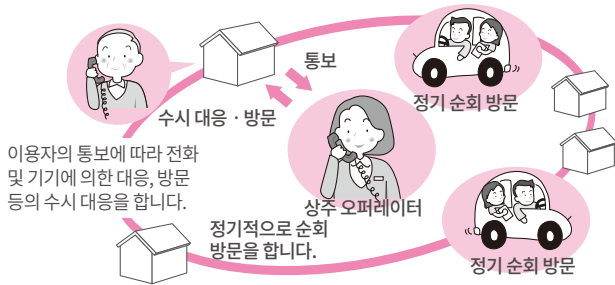
밀착 지역밀착형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민(시의 개호보험 피보험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대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기 순회 ·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밀착**

24시간 방문 개호와 방문 간호가 일체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정기 순회형 방문과 수시 대응·방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한 군데로 제한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개호·간호 이용	개호 이용
요개호 1	9,243엔	6,335엔
요개호 2	14,440엔	11,307엔
요개호 3	22,041엔	18,774엔
요개호 4	27,171엔	23,749엔
요개호 5	32,917엔	28,722엔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밀착**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밀착**

이용자에게 친숙한 지역에서 사업소에 다니면서 받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직원이 이용자 자택을 방문하거나 사업소에 숙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및 숙박 서비스는 이용자가 다니던 사업소의 친숙한 직원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용료는 1개월 단위의 정액 요금(숙박비 등이 별도로 소요됩니다)이며,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는 1곳에 한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동안에는 방문 개호(홈 헬프) 및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단기 입소 생활 개호·요양 개호(쇼트 스테이) 등 일부 재택 서비스와 다른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케어 플랜은 사업소에 소속된 케어 매니저가 작성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요개호	금액
요개호 1	11,341엔	
요개호 2	16,666엔	
요개호 3	24,244엔	
요개호 4	26,758엔	
요개호 5	29,504엔	

+ 식비, 숙박비, 일상생활비 등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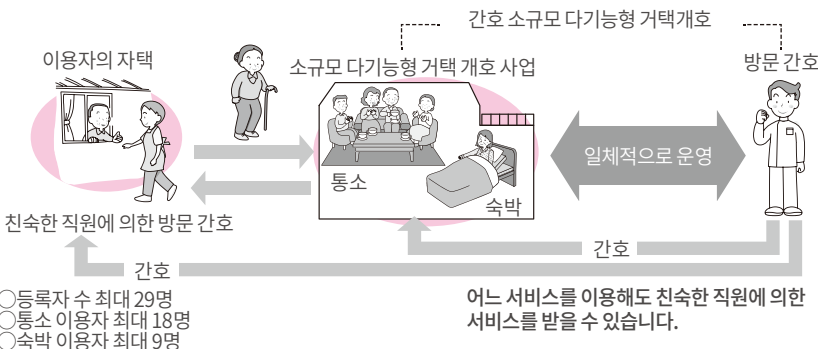
1개월당	요지원	금액
요지원 1	3,741엔	
요지원 2	7,560엔	

+ 식비, 숙박비, 일상생활비 등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구명칭: 복합형 서비스) **밀착**

사업소 '통소'를 통해 받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상황 및 희망에 따라 '방문', '숙박' 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와 방문 간호를 접목한 서비스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1곳에 한합니다. 또한, 케어 플랜은 사업소에 소속된 케어 매니저가 작성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요개호	금액
요개호 1	13,533엔	
요개호 2	18,935엔	
요개호 3	26,617엔	
요개호 4	30,189엔	
요개호 5	34,148엔	

+ 식비, 숙박비, 일상생활비 등

- 등록자 수 최대 29명
- 통소 이용자 최대 18명
- 숙박 이용자 최대 9명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밀착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민(시의 개호보험 피보험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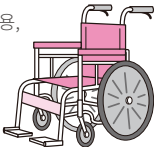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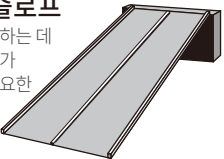
복지용구 대여(렌탈)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 예방 복지용구 대여(렌탈)

개호 예방으로 이어지는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 대상(13종류)

1 휠체어 *자주용, 보조용, 보통형 전동 휠체어 	2 휠체어 부속품 *쿠션, 전동 보조 장치 등 	3 특수 침대 *등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침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등 	4 특수 침대 부속품 매트리스, 이동용 바, 사이드 레일, 테이블, 보조용 벨트, 슬라이딩 보드·매트 
5 욕창 방지 용구 *에어 매트, 워터 매트 등 	6 자세 변환기 *기상 보조 장치 등 포함 	7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 *침상 이탈 감지 센서 등 포함 	8 이동용 리프트 *계단 이동용 리프트 등 포함 
9 자동 배설 처리 장치 *교환 가능 부품 제외 	※1~8은 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요지원 1·2, 요개호 1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9 자동 배설 처리 장치 가운데 대변을 흡입하는 기능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요지원 1·2, 요개호 1~3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소변을 흡입하는 장치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손잡이 *장착하는데 공사가 불필요한 것 	11 슬로프 *장착하는데 공사가 불필요한 것 	12 보행기 	13 보행 보조 지팡이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대여 금액의 10%(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0% 또는 30%) ※대여 금액은 용구의 종류·품목, 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

특정 복지용구 구매

대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배설 및 입욕 등을 위한 복지용구를 지정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 구매비 일부가 환급됩니다.

특정 개호 예방 복지용구 판매

개호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배설 및 입욕 등을 위한 복지용구를 지정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 구매비 일부가 환급됩니다.

구매 대상 (5종류)

■ 지정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 아닌 경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개호 제공 유료 노인용 및 그룹 홈에 입주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이 좌변기 *좌변기의 바닥 높임 재료 등을 포함 	자동 배설 처리 장치의 교환 가능 부품 *리시버, 튜브, 탱크 등 	입욕 보조 용구 *입욕용 의자, 욕조 내 의자, 입욕대·입욕용 보조 벨트 등 	간이 욕조 	이동용 리프트에 매다는 용구 
------------------------------------------------------------------------------------------------------------------------------	---------------------------------------------------------------------------------------------------------------------------------------	---------------------------------------------------------------------------------------------------------------------------------------------	------------------------------------------------------------------------------------------------------	-----------------------------------------------------------------------------------------------------------------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구매 금액의 10%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0% 또는 30%)

환급 한도액 : 10% 부담의 경우는 9만엔(연간)
 ※구입 금액이 10만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① 신청서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배포) ② 영수증
 ③ 복지용구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에 기재, 이유서, 거택 서비스 계획, 복지용구 판매계획 중 한 가지)
 ④ 해당 복지용구의 팸플릿 등 (복지용구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복지용구는 중복해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

주택 개수

개호 예방 주택 개수

재택 요개호자 등이 자택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택 개수를 한 경우에 20만 엔을 한도로 지불한 금액 일부가 환급됩니다.



대상이 되는 공사

- ① 안전 손잡이 설치
- ② 단차 또는 경사 해소
- ③ 미끄럼 방지 및 원활한 이동 등을 위한 바닥, 통로면 재료 변경
- ④ 미닫이문 등으로 교체(문 철거, 문 신설[교체보다 비용이 저렴한 경우] 포함)
- ⑤ 좌식 변기를 양변기 등으로 변기 교체
- ⑥ 상기 ①~⑤의 공사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 안전 손잡이 설치를 위한 벽의 골조 보강
 - 욕실, 화장실 공사에 따른 급배수 설비 공사
 - 슬로프 설치에 의한 전락, 탈륜 방지를 위한 울타리 등 설치
 - 문 교체에 따른 벽 또는 기둥 개수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수령 위임 지불이 아닌 경우)

[공사 전]

- ① 신청서(구청 보험연금과에서 배포)
- ② 견적서 및 견적금액 내역서
- ③ 주택 개수가 필요한 이유서(케어 매니저가 작성. 담당 케어 매니저가 없는 경우는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와 상담해 주십시오.)
- ④ 공사 시공 전의 사진
- ⑤ 주택 개수 후의 완성 예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사진·그림 등)
- ⑥ 주택 개수에 관한 승낙서 및 임대 계약서 사본(임대 주택인 경우)

[공사 완성 후]

- ① 영수증 및 공사 내역서
- ② 개수 후의 사진

■ 유료 노인홈 및 그룹 홈,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 등 고령자용 시설·주거시설에 입주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주택 개수에 대하여

주택 개수는 이용자가 비용의 전액(보험 급부분+본인 부담분)을 일단 지불하고 추후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보험 급부분)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요코하마시에는 본인 부담분만을 사업자에게 지불하면 개수할 수 있는 수령 위임 지불제도가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시에 등록된 주택 개수 사업자가 시행하는 개수가 대상입니다. 등록 사업자 명부는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 및 보험연금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호보험의 주택 개수와는 별도로 주거 환경 정비사업(39페이지)이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주택 개수 명부 [검색](#)

지원 대상 공사, 지원 금액 등이 다르지만,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 환경 정비사업도 반드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와 상담해 주십시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개수 비용의 10%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0% 또는 30%) 환급 한도액 (10% 부담의 경우는 18만 엔)

※ 개수 비용의 한도액은 현 주택당 20만엔 입니다.

이사한 경우 또는 '개호가 필요한 정도 (※)'가 3단계 이상 위중해진 경우는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도액 20만 엔).
(※) 요개호 1과 요지원 2는 같은 단계로 간주합니다.

- 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청합니다. 보험연금과에서 발급되는 '주택 개수에 관한 안내서'를 받은 후에 공사를 개시합니다.
- ② 공사 완료 후 일단 비용의 전액을 사업자에게 지불한 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보험연금과에 제출하면 보험 급부분이 환급됩니다.

요개호 1~5의 분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밀착

치매 고령자께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5~9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개호를 받습니다. 방, 거실, 식당, 욕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자가 각각 역할을 맡아 가사 등을 하면서 치매 증상의 진행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유닛 수에 따라 부담액이 다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1유닛	2유닛 이상
요개호 1	24,571엔	24,185엔
요개호 2	25,728엔	25,310엔
요개호 3	26,468엔	26,082엔
요개호 4	27,015엔	26,597엔
요개호 5	27,594엔	27,143엔



- 식비
- 방세,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 일상생활비, 기저귀비, 이미용비 등

요개호 1~5의 분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제공 유료 노인홈 등)

개호보험 지정을 받은 개호 제공 유료 노인홈 등에 입주하여 식사 · 입욕 · 배설 등과 관련된 개호 및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이용(30일 상한)을 제공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요개호 1	요개호 2	요개호 3	요개호 4	요개호 5
17,302엔	19,425엔	21,676엔	23,734엔	25,954엔

- 관리비 식비
- 수도광열비, 집세 상당액, 일상생활비, 기저귀비, 이미용비 등

요지원 2의 분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밀착 공동생활 개호

치매 고령자께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직원이 일상생활상의 지원과 함께 생활 기능 향상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요지원 1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유닛 수에 따라 부담액이 다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1유닛	2유닛 이상
요지원 2	24,442엔	24,056엔



- 식비
- 방세,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 일상생활비, 기저귀비, 이미용비 등

요지원 1 · 2의 분

개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제공 유료 노인홈 등)

개호보험 지정을 받은 개호 제공 유료 노인홈 등에 입주하여 직원에게 일상생활상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생활 기능 향상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요지원 1	요지원 2
5,854엔	10,002엔

- 관리비 식비
- 수도광열비, 집세 상당액, 일상생활비, 기저귀비, 이미용비 등

요개호 1~5의 분(요지원 1 · 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개호 제공 유료 노인홈 등) 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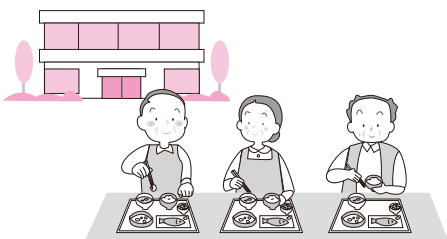
정원 29명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개호 제공 유료 노인홈 등(개호 전용형 특정시설)입니다. 소수 인원의 입주자에게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와 똑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요지원 1	17,431엔
요지원 2	19,586엔
요지원 3	21,837엔
요지원 4	23,927엔
요지원 5	26,146엔

- 관리비, 수도광열비, 집세 상당액
- 식비
- 일상생활비, 기저귀비, 이미용비 등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밀착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민(시의 개호보험 피보험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계 서비스

원칙적으로 요개호 3~5의 분(요지원 1·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개호 1·2의 분은 특례 입소 제도가 있습니다(아래 참조)

개호 노인 복지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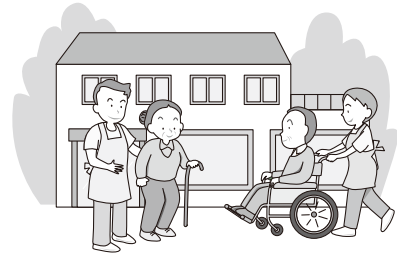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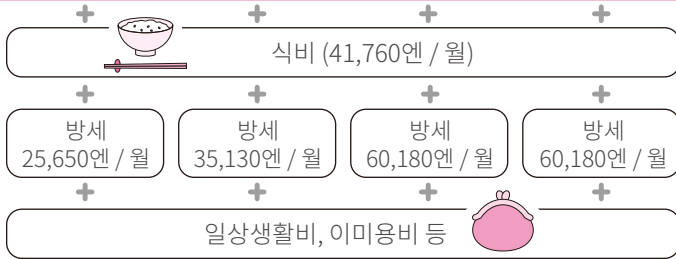
입욕, 배설, 식사 개호 등, 일상생활상의 지원, 기능 훈련, 건강 관리 및 영양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시설 밀착 입소자 생활 개호 入住者生活介护

정원 29명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특별 양호 노인홈입니다. 소수 인원의 입주자에게 특별 양호 노인홈과 똑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개호 노인 복지시설]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개호 노인 복지시설]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개호 노인 복지시설]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개인실	[지역 밀착형 노인 복지시설]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개인실
요개호 1	18,428엔	18,428엔	20,969엔	21,258엔
요개호 2	20,615엔	20,615엔	23,156엔	23,477엔
요개호 3	22,898엔	22,898엔	25,503엔	25,825엔
요개호 4	25,085엔	25,085엔	27,722엔	28,108엔
요개호 5	27,240엔	27,240엔	29,877엔	30,295엔



◇이 밖에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기저귀비는 개호보험에 포함됩니다.

※ 식비 · 방세는 국가(일본)가 제시하는 표준적인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35페이지).

※ 수입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한 식비 및 방세가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35, 38페이지).

밀착

[밀착]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민(시의 개호보험 피보험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입소 제도 안내

2015년 4월부터 특별 양호 노인홈은 원칙적으로 요개호 3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한 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요개호 1·2의 분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례로서 입소가 인정됩니다.

- 가 치매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증상, 행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자주 있으므로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기 어렵다.
- 나 지적 장애·정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증상, 행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자주 있으므로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기 어렵다.
- 다 가족 등에 의한 심각한 학대 등이 의심되므로 심신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라 단신자 세대이다, 동거 가족이 고령 또는 병약하다 등의 이유로 가족 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지역에서 개호 서비스나 생활 지원의 공급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기 어렵다.

요개호 1·2의 분 가운데 입소를 희망하는 분은 입소 신청서에 기재되는 특례 입소 요건의 해당란에 체크를 하시고 신청하십시오.

개호 노인 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홈) 입소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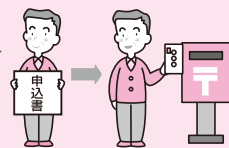
신청은 '입소 신청 접수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합니다.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 지역 케어 플라자, 각 특별 양호 노인홈, 건강복지국 고령시설과 등에서 배포하고 있는 신청서에 기입한 후 아래로 보내 주십시오.

< 신청하시는 곳 > 우 233-0002 고난구 가미오오카 니시 1-6-1 유메오오카 오피스 타워 10층

특별 양호 노인홈 입소 신청 접수센터 (고령자 시설 · 주거 상담 센터 내)

전화 : 045-840-5817 FAX : 045-840-5816



입소 신청 접수센터

고령자 시설 · 주거 상담 센터

고령자 시설 · 주거에 관한 상담 창구로서 '고령자 시설 · 주거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에 응하거나 시설 기본 정보 · 입소 대기 상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구 : 고난구 가미오오카 니시 1-6-1 유메오오카 오피스 타워 10층 전화 : 045-342-8866 FAX : 045-840-5816

◇상담 접수 시간(예약 우선) : 월~금 9:00~17:00(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무)

◇제공하는 시설 정보 : 특별 양호 노인홈 · 개호 노인 보건시설 · 그룹 홈 · 경비 노인홈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요지원 1·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호 노인 보건시설

이용자가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동작의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면서 재택 생활 복귀를 목표로 한 시설입니다. 재택 생활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퇴소하여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병의 상태에 따라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는 적절한 의료기관을 소개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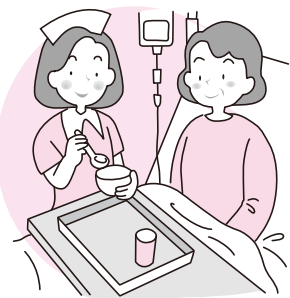
1개월당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개인실
요개호 1	25,342엔	22,963엔	25,600엔
요개호 2	26,886엔	24,410엔	27,047엔
요개호 3	28,880엔	26,404엔	29,041엔
요개호 4	30,520엔	28,108엔	30,745엔
요개호 5	32,257엔	29,748엔	32,450엔



개호 영양형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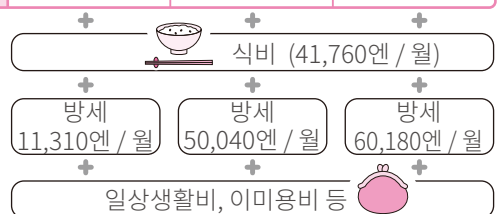
요양 병상과 노인성 치매 질환 요양 병동의 2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 병상은 병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전문적인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을 위한 장기 요양 시설입니다. 노인성 치매 질환 요양 병동에서는 치매 고령자에게 영양상의 관리, 간호, 기능 훈련 및 그 밖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17년도 말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폐지 기한이 6년 연기되었습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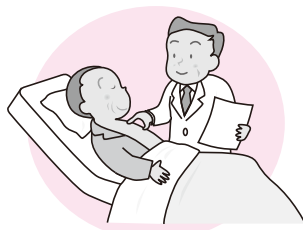
1개월당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개인실
요개호 1	22,062엔	19,071엔	22,705엔
요개호 2	25,117엔	22,030엔	25,761엔
요개호 3	31,582엔	28,591엔	32,225엔
요개호 4	34,412엔	31,324엔	35,055엔
요개호 5	36,856엔	33,833엔	37,499엔



개호 의료원

개호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만성기 의료 및 개호가 모두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의학 관리'와 '간병·터미널 케어' 등의 의료 기능, '생활 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춘 시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I 형

1개월당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요개호 1	26,532엔	22,963엔
요개호 2	30,038엔	26,500엔
요개호 3	37,660엔	34,090엔
요개호 4	40,876엔	37,338엔
요개호 5	43,802엔	40,233엔



◇ 이 밖에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 거저귀비는 개호보험에 포함됩니다.
 ※ 식비·방세는 국가(일본)가 제시하는 표준적인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35페이지).
 ※ 수입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한 식비 및 방세가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35, 38페이지).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 영양형 의료시설 및 개호 의료원 입소 신청방법

각 시설이 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각 시설에서 입수하여 직접 시설에 신청합니다.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과 상담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입소 신청



계약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이용자 부담 비율*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서비스 비용 이외에 식비·방세를 부담합니다. 식비·방세 등은 이용할 경우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자별로 다릅니다.

①거택 서비스 ②지역 밀착형 서비스 를 이용한 경우(요지원 1·2, 요개호 1~5 공통)				
방문 간호 · 방문 입욕 간호 · 방문 간호 방문 재활치료 · 거택 영양 관리지도 등	서비스 비용			
통소 간호 통소 재활치료 등	서비스 비용	식비 		일상생활비 
단기 입소 생활 간호 (쇼트 스테이) 단기 입소 영양 간호	서비스 비용	식비 	방세 	일상생활비 (이미용비 등)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간호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간호 등	서비스 비용	식비 	방세 	일상생활비 
③시설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개호 노인 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홈)은 원칙적으로 요개호3 이상, 그 밖의 시설 서비스는 요개호 1~5)				
개호 노인 복지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개호 노인 보건시설 ·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 개호 의료원	서비스 비용	식비 	방세 	일상생활비 (이미용비 등) 

※쇼트 스테이와 시설 서비스는 기저귀비 부담은 없습니다.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별도로 이용자 부담이 있습니다.

-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험분 부담과는 별도로 이용자 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예) 개호보험 대상이 아닌 서비스 및 본인의 케어 플랜에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
(이용자와 사업자가 개호보험 외 서비스를 계약한 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이용자 부담 비율은 3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제1호 피보험자(만 65세 이상) 중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의 이용자 부담 비율은 20% 혹은 30%입니다. 단, 1개월 이용자 부담에는 상한액(※)이 있으니, 부담이 반드시 2배 혹은 3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한액은 34페이지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액)'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이용자 부담 비율 판정

아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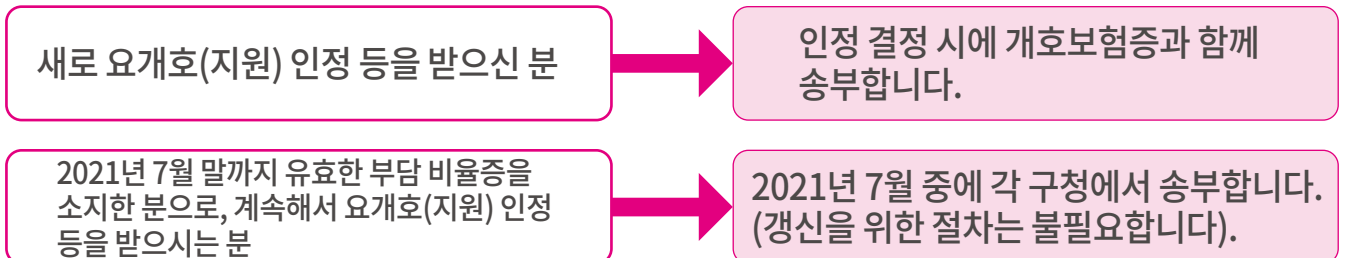
비율	기준
10%	다음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① 본인이 시민세 비과세인 분 ②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 160만엔 미만인 분 ③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 엔 이상으로 다음의 (a) 또는 (b)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 (a) 세대에 제1호 피보험자가 본인 한 사람뿐이며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기타 합계 소득 금액 (※2)'의 합계가 280만 엔 미만인 분 (b) 세대에 제1호 피보험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며 세대 내 제1호 피보험자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기타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346만 엔 미만인 분 ④ 생활보호 등 수급자 ⑤ 구조치 입소자의 분(2000년 4월 1일 이전부터 시초촌(市町村)의 조치로 특별 양호 노인 홈에 입소하고 있는 분) ⑥ 제2호 피보험자인 분(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의 분)
20%	다음의 ①또는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① 10%에 해당하지 않는 분 가운데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220만 엔 미만 ②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220만 엔 이상으로 다음의 (a) 또는 (b)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 (a) 세대에 제1호 피보험자가 본인 한 사람뿐이며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기타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280만 엔 이상 340만 엔 미만인 분 (b) 세대에 제1호 피보험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며 세대 내 제1호 피보험자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기타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346만 엔 이상 463엔 미만인 분
30%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220만 엔 이상으로 다음의 (a) 또는 (b)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 (a) 세대에 제1호 피보험자가 본인 한 사람뿐이며,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기타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340만 엔 이상 (b) 세대에 제1호 피보험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며, 세대 내 제1호 피보험자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기타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463만 엔 이상

※1 합계 소득 금액...7페이지 '보험료 안내'의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합계 소득 금액...7페이지 '보험료 안내'의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부담 비율증)

이용자 부담 비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용하고 계시는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에 개호 보험증과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매년 8월 1일에 이용자 부담 비율에 대해 판정을 합니다.

※세대 내 제1호 피보험자(만 65세 이상)의 인원수나 시민세의 과세 상황 및 수입액 등의 변경 시에도 판정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까?

- 시민세 비과세
- 생활보호 등 수급자
- 구조치 입소자
-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 엔 미만
- 제2호 피보험자

네.

10%

아니요.

세대 내 제1호 피보험자는 당신뿐입니까?

네.

당신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기타 합계 소득 금액' 합계가 280만 엔 미만입니까?

네.

10%

아니요.

당신을 포함한 제1호 피보험자 전원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기타 합계 소득 금액' 합계가 346만 엔 미만입니까?

네.

10%

아니요.

당신의 합계 소득 금액이 220만 엔 이상이고 '공적 연금 등 수입액+기타 합계 소득 금액' 합계가 340만 엔 이상입니까?

네.

30%

아니요.

20%

당신의 합계 소득 금액이 220만 엔 이상이고 당신을 포함한 제1호 피보험자 전원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기타 합계 소득 금액' 합계가 463만 엔 이상입니까?

네.

30%

아니요.

20%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신속하게 신고해 주십시오

교통사고 및 상해 사건 등 제3자(가해자)의 행위가 원인으로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호 비용의 부담 방법이 다르므로 '제3자의 행위와 관련된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신고에는 경찰의 교통사고 증명서 등도 필요하므로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와 신속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 개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제3자(가해자)의 행위가 원인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필요한 개호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개호 비용 보험 급부 분은 요코하마시가 일시 대납하며, 추후에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 만약 합의를 하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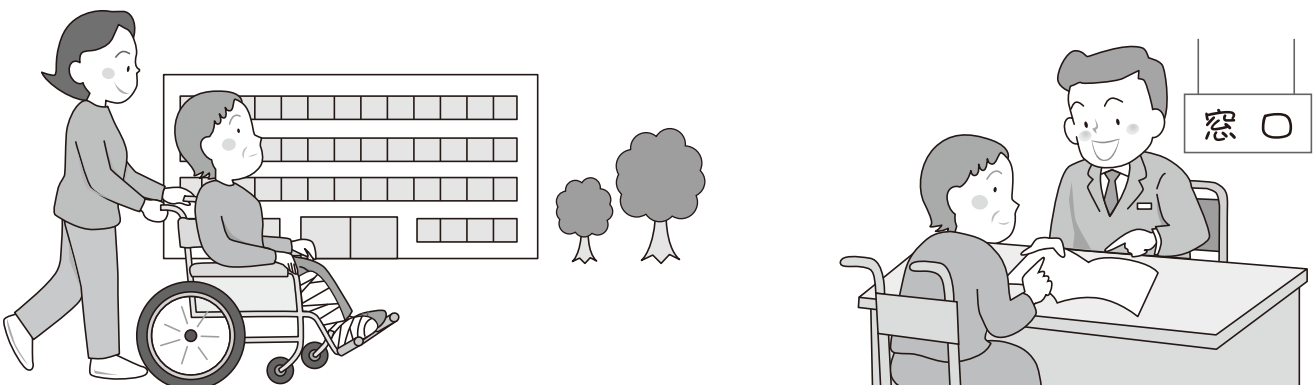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상의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개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성립 후에 이용한 서비스는

- ① 이미 요코하마시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개호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2중 지불을 피한다는 취지에서 요코하마시가 피보험자(피해자)에게 해당 비용의 반환 청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요코하마시가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개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합의로 받은 개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분은 요코하마시에서 보험 급부를 할 수 없으므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합의를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합의하지 않으면 피보험자(피해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는 사전에 연락을 하시고 동시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는 신속하게 합의서 사본을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자 부담 경감 안내 고액 개호 서비스비

● 내 용

1개월 이용자 부담이 일정 상한액(아래 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신청하면 '고액 개호 서비스비'가 환급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용자 부담이란 보험 대상인 개호 서비스 비용의 10%(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0% 또는 30%) 부담 상당액을 가리킵니다.

※ 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의 일부, 시설 서비스 등의 식비·거주비 등, 복지용구 구매, 주택 개수

● 이용의 흐름

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번째 이후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음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본인 부담 상한액은 세대로 합산하므로 부부 등 요개호자(요지원자)가 2명 이상 있는 세대인 경우, 그 이용료를 합산하여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 고액 개호 서비스비가 환급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left(\text{세대 전체의 이용자 부담액} - \text{세대의 본인 부담 상한액} \right) \times \frac{\text{본인의 본인 부담액}}{\text{세대 전체의 이용자 부담액}}$$

예1 세대에 요개호자(요지원자)가 1명만 있는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이 24,600엔인 단신자 세대가 한달에 30,000엔을 본인 부담한 경우.

$$\text{산정방법} \quad \frac{\text{본인의 본인 부담액} - \text{본인의 본인 부담 상한액}}{\text{30,000엔}} = \frac{30,000\text{엔} - 24,600\text{엔}}{\text{30,000엔}} = 5,400\text{엔}$$

예2 세대에 요개호자(요지원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세대 합산을 할 경우)

부부 2명 모두 시민세 비과세 세대(세대의 본인 부담 상한액 : 24,600엔)인 제3단계로 한달에 남편이 30,000엔, 아내가 10,000엔을 본인 부담한 경우.

1 남편의 고액 개호 서비스비

$$\left\{ (30,000\text{엔} + 10,000\text{엔}) - 24,600\text{엔} \right\} \times \frac{30,000\text{엔}}{30,000\text{엔} + 10,000\text{엔}} = 11,550\text{엔}$$

2 아내의 고액 개호 서비스비

$$\left\{ (30,000\text{엔} + 10,000\text{엔}) - 24,600\text{엔} \right\} \times \frac{10,000\text{엔}}{30,000\text{엔} + 10,000\text{엔}} = 3,850\text{엔}$$

※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세대 합산 결과 한 명의 세대원에게 한꺼번에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 단계 (월액)

소득 구분	상한액(월액) ※1
현역 수준의 소득자Ⅲ(과세 소득 690만 엔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는 세대이신 분	140,100엔 (세대) ※3
현역 수준의 소득자Ⅱ(과세 소득 380만 엔 이상 690만 엔 미만)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는 세대이신 분	93,000엔 (세대) ※3
현역 수준의 소득자Ⅰ(과세 소득 145만 엔 이상 380만 엔 미만)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는 세대이신 분	44,400엔 (세대)
세대 중 누군가에게 시민세가 부과된 분	44,400엔 (세대)
세대 전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분	24,600엔 (세대)
· 노령복지연금을 받고 있는 분 · 전년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기타 합계 소득 금액※2'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이신 분	24,600엔 (세대) 15,000엔 (개인)
생활 보호 등을 받고 있는 분	15,000엔 (개인)

※ 1 '세대'란 주민 기본대장의 세대원 가운데 개호 서비스를 이용한 분 전원의 부담 합계 상한액을 말하며 '개인'이란 개호 서비스를 이용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말합니다.

※ 2 기타 합계 소득 금액... 7페이지 '보험료에 대하여'의 ※4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3 2021년 8월 서비스 이용분부터 추가됩니다.

식비·방세 부담 경감 <介護保険負担限度認定証>

● 내 용

시설 입소 및 단기 입소(쇼트 스테이) 이용 시의 식비·방세는 일반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오나, 소득이 낮은 분이 서비스 이용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세대(※1)·본인 소득에 따른 부담 한도액이 마련되어 본인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이용의 흐름

구청 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여 ‘개호 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호 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시설에 제시하시면 식비·방세가 단계에 따라 아래 표 ‘부담 한도액(일액)’ 금액으로 경감됩니다.

【부담 한도액 인정 신청 시에 필요한 것】

· 개호 보험증 · 피보험자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예저금 통장 등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이 되는 서비스

- 시설 서비스(특별 양호 노인홈·개호 노인 복지시설·개호 요양형 의료시설·개호 의료원)
-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부담 한도액(일액)

단계	대상자	방세					식비	
		다인실	종래형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타입 다인실	유닛형 개인실	시설 입소	단기 입소
			(특별 양호 노인홈 등)	(개호 노인 보건시설·개호 요양형의료시설 등)				
제1 단계	· 시민세 비과세 세대 (※1) 이며 노령복지연금을 받고 있는 분 · 생활 보호 등을 받고 있는 분	0엔	320엔	490엔	490엔	820엔	300엔	300엔
제2 단계	시민세 비과세 세대로,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기타 합계 소득 금액(※2)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이신 분으로, 예저금 등의 합계액이 기준액(※3) 이하이신 분	370엔	420엔	490엔	490엔	820엔	390엔	(7월까지) 390엔 (8월부터) 600엔
제3 단계	7월까지 시민세 비과세 세대로, 예저금 등의 합계액이 기준액 이하이며 제2단계 이외이신 분	370엔	820엔	1,310엔	1,310엔	1,310엔	650엔	650엔
	8월부터 제3단계(1) 시민세 비과세 세대로,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기타 합계 소득 금액(※2)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이며, 예저금 등의 합계액이 기준액(※3) 이하이신 분	370엔	820엔	1,310엔	1,310엔	1,310엔	650엔	1,000엔
	제3단계(2) 시민세 비과세 세대로,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기타 합계 소득 금액(※2)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연간 120만엔 초과이며, 예저금 등의 합계액이 기준액(※3) 이하이신 분						1,360엔	1,300엔
제4 단계	상기 이외의 분	· 제4단계 분에게는 부담 한도액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 식비 및 방세는 시설과의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세대 ... 본인이 속한 주민 기본태장 상의 세대(배우자가 다른 세대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2 기타 합계 소득 금액 ... 7페이지 ‘보험료에 대하여’의 ※4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3 기준액 ... 단신자인 경우는 본인의 금액이 1,000만 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2,000만 엔)
단 2021년 8월 이후에는 제2단계 및 제3단계의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호 피보험자는 기존과 같습니다)
제2단계: 본인의 금액이 650만 엔(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합계액이 1,650만 엔)
제3단계①: 본인의 금액이 550만 엔(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합계액이 1,550만 엔)
제3단계②: 본인의 금액이 500만 엔(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합계액이 1,500만 엔)

국가(일본)가 지정한 기준 비용액(일액)

방세		식비
다인실	(특별 양호 노인홈 등) 855엔	(7월까지) 1,392엔
	(개호 노인 보건시설·개호 요양형의료시설 등) 377엔	
종래형개인실	(특별 양호 노인홈 등) 1,171엔	(8월부터) 1,445엔
	(개호 노인 보건시설·개호 요양형의료시설 등) 1,668엔	
유닛형 개인실 타입 다인실	1,668엔	
유닛형 개인실	2,006엔	

부담 한도액 제4단계에 해당하는 분의 특례 <특례 감액 조치>

2명 이상의 세대가 개호 보험 시설 혹은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에 입소(쇼트 스테이는 대상 외)하여 아래 표의 요건을 전부 만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부담 한도액이 제3단계로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험 연금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특례 감액 조치 대상자 요건	특례 감액 조치 내용
① 제4단계의 식비·방세를 부담할 것. ② 세대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4)과 기타 합계 소득 금액(※5)의 합계에서 시설 이용자 부담(본인 부담, 식비·방세 연간 예상액)을 제한 금액이 80만엔 이하일 것. ③ 세대의 예저금 등 합계가 450만엔 이하이다. ④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산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⑤ 개호보험료 체납이 없다.	왼쪽의 요건 ②에 해당하지 않을 때까지 식비 또는 방세 또는 이 2가지 모두에 대해 부담 한도액 제3단계의 부담 한도액을 적용 처리합니다.

※4 공적 연금 등 수입액 ... 7페이지 '보험료에 대하여'의 ※3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5 기타 합계 소득 금액 ... 7페이지 '보험료에 대하여'의 ※4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식비·방세 차액 환급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호 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시설에 제시하지 못해서 '부담 한도액'을 초과하지만 '국가가 지정한 기준 비용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에 기반해서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험 연금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부담 한도액 및 '국가(일본)가 규정한 기준 비용액'은 35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불한 금액이 '국가가 지정한 기준 비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설에 지불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해 주십시오.

[차액 지급 신청 시에 필요한 것]

· 개호보험증 · 식비, 방세 영수증 · 인감(인주를 사용하는 것) · 입금 계좌 확인이 가능한 자료

고액 의료 · 고액 개호 합산제도

각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조합 등의 사회보험(이하 '피용자보험'이라 합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과 '개호보험(※1)'의 본인 부담 1년간 합계액이 고액이 된 경우에 규정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의료보험 청구(※2)에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신청 시 영수증은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의료보험에 문의해 주십시오.

※1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도 일부 대상이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또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한 분의 경우, 청구는 구청 보험연금과입니다.

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 제도의 세대 본인 상한액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12개월 간의 합계

소득 구분	계산 기간의 전년 소득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 등)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70세 미만인 분
a	901만 엔 이상	2,120,000엔
b	600만 엔 이상 901만 엔 이하	1,410,000엔
c	210만 엔 이상 600만 엔 이하	670,000엔
d	210만 엔 이하	600,000엔
e	시민세 비과세 세대	340,000엔

소득 구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만 70~74 세인 분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한 분
현역 수준의 소득자Ⅲ	2,120,000엔	
현역 수준의 소득자Ⅱ	1,410,000엔	
현역 수준의 소득자Ⅰ	670,000엔	
일반	560,000엔	
저소득자Ⅱ	310,000엔	
저소득자Ⅰ	190,000엔	

● 소득 구분 및 본인 부담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의료보험 청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 같은 세대라도 각각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 피용자보험에 가입한 분은 가입한 건강보험에 문의해 주십시오.

● 저소득자Ⅰ 구분 세대로 개호 서비스비 등의 이용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의료 보험으로부터의 지급은 위 표의 본인 부담 상한액으로 계산되며, 개호 보험으로부터의 지급은 별도로 설정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세대에 31만 엔'으로 계산됩니다.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그 밖의 이용자 부담 경감 개호 서비스 본인 부담 지원(요코하마시 자체제도)

● 내 용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으며(※1) 수입 요건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택 서비스 및 그룹 홈 이용 시의 이용자 부담(※2), 그룹 홈의 월세·식비·수도광열비 및 특별 양호 노인홈 등의 유닛형 개인실 거주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험 연금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1 재택 서비스 지원의 경우, 종합사업의 사업 대상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부담이란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서비스 비용의 10% 부담(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0% 또는 30%)'을 말합니다.

● 이용의 흐름

개호 서비스 본인 부담 지원(재택 서비스 지원, 그룹 홈 지원, 시설 거주비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인정을 받으면 지원증이 교부됩니다. 지원증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경감된 이용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택 서비스 지원

< 대상 서비스 >

방문 개호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정기 순회 ·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개호 예방) 방문 입욕 개호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개호 예방) 방문 간호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1 ※3	종합사업에 의한 방문형 서비스 ※2
(개호 예방) 방문 재활치료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1	종합사업에 의한 통소형 서비스 ※2
통소 개호 ※3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1 단기 이용(쇼트 스테이)의 경우에 한함. ※2 지정 사업자에 의한 것이며 이용자 부담이 정률인 것에 한함. ※3 지역 밀착형 포함
(개호 예방) 통소 재활치료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개호 예방) 복지용구 대여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 지원 대상 요건 및 지원 내용 >

지원 단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지원 대상 요건	수입 기준 등	생활보호 수급자를 제외한 개호보험료 제1단계인 분	시민세 비과세 세대 가운데 연간 수입 예상액의 합계가 150만엔 이하인 분 ※2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는 상기 요건과 아울러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5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가 되는 분	제2단계 이외인 분
	자산 기준	금융자산(현금, 예저금, 유가증권)이 350만엔 이하(2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10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이며 또한 거주용 토지(200㎡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합계 소득 금액과 공적 연금 등 수입액 (비과세 연금 제외) 합계가 80만 엔 이하인 분	
지원 내용		이용자부담을 3%로 경감 또한 나머지 본인 부담액이 4,5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	이용자부담을 5%로 경감 또한 나머지 본인 부담액이 7,5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	이용자부담을 5%로 경감 또한 나머지 본인 부담액이 12,3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

※ 세대란 기본적으로는 주민 등록으로 같은 세대로 등록된 사람 전원을 가리키나 다른 세대라도 동거해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 그룹 홈 지원

〈 대상 서비스 〉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 단기 이용(쇼트 스테이) 제외.

〈 지원 대상 요건 및 지원 내용 〉

지원 단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지원 대상 요건	수입 기준 등	생활보호 수급자를 제외한 개호보험료 제1단계인 분	시민세 비과세 세대이며 연간 수입 예상액의 합계가 150 만 엔 이하인 분 ※2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는 상기 요건과 아울러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5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가 되는 분	제2단계 이외인 분
	자산 기준	금융자산(현금, 예저금, 유가증권)이 350만엔 이하 (2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를 세대 구성원 1명당 10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이며 또한 거주용 토지(200㎡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기타 요건	· 3개월 이상 요코하마시에 거주하고 있다 · 세법상 피부양자가 아니다		
지원 내용		이용자 부담을 5%로 경감 또한 나머지 본인 부담액이 7,5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 집세·식비·수도광열비에 대해 월액 55,000엔을 상한으로 조성		이용자 부담을 5%로 경감 또한 나머지 본인 부담액이 12,3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 집세·식비·수도광열비에 대해 월액 30,000엔을 상한으로 조성

● 시설 거주비 지원

〈 대상 서비스 〉 시설 서비스 [개호 노인 복지시설,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개호 의료원],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지원 대상 요건 및 지원 내용 〉

지원 단계		제1단계	제2단계
지원 대상 요건	수입 기준 등	생활보호 수급자를 제외한 개호보험료 제1단계이며 연간 수입 예상액의 합계가 50만엔 이하인 분	시민세 비과세로 연간 수입 예상액의 합계가 50 만엔 이하인 분
	자산 기준	금융자산(현금, 예저금, 유가증권)이 350만엔 이하(2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10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이며 또한 거주용 토지(200㎡ 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기타 요건	·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제1·제2단계)을 받고 있다. · 세법상 피부양자가 아니다	
지원 내용		유닛형 개인실 거주비를 월액 5,000엔 정도 조성(일액:165엔)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사회복지법인이 시행하는 대상 서비스의 이용 부담액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복지국 고령시설과(전화 045-671-3923)에 문의해 주십시오.

〈 대상 서비스 ※1 〉

특별 양호 노인홈 ※2	통소 개호※2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방문 개호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제1호 방문 사업 가운데 구 개호 예방 방문 개호에 상당하는 사업 ※3		제1호 통소 사업 가운데 구 개호 예방 통소 개호에 상당하는 사업 ※3

※1 경감 내용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2 지역 밀착형 포함 ※3 본인 부담 비율이 보험 급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 경감 대상 요건 및 경감 내용 〉

경감 대상 요건	경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세 비과세 세대 · 수입... 단신자 세대로 연액 150만 엔 이하(세대 구성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0만 엔 가산) · 자산... 금융:단신자 세대로 350만 엔 이하(세대 구성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 엔 가산) ...부동산:거주용 토지(200㎡ 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부담 능력이 있는 친족 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다. · 개호보험료 체납이 없다. ※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p>원칙적으로 이용자 부담액(개호 서비스비의 10% 부담, 식비, 방세)의 25% 또는 50%를 경감합니다.</p> <p>※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 양호 노인홈·단기 입소 생활 개호 등의 식비, 방세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 수급자 	특별 양호 노인홈 등의 개인실 이용 시 방세를 100% 경감합니다.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개호보험 이외의 서비스

요코하마시에서는 개호보험 서비스와 별도로 원호가 필요한 고령자분의 재택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호보험의 급부 대상이 아닌 분에게도 자립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 또는 가까운 지역 케어 플라자 등의 지역 포괄 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재택 요원호 고령자에게 대한 지원

재택에서 원호가 필요한 고령자분의 신체 상황 및 개호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호보험 대상 서비스와는 별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심 전화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등의 고령자분을 대상으로 이웃 분이나 구급기관과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기에 통보 장치를 설치합니다. 이용할 때는 자택에 고정 전화 회선과 전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고정 전화 사용에 필요한 요금의 지불과 아울러 시민세 과세 세대자는 매월 650엔(세금 별도)의 통보 장치 사용료자. 부과됩니다.

주거 환경 정비

요지원 또는 요개호로 인정된 분중 필요성이 인정된 분에게 신체 상황에 맞춘 주택 개조 상담·조언 및 소득 상황에 따른 개조비 지원을 합니다(지원 한도 기준액 100만엔). 생계 중심자의 시민세액에 따라 부담 없음·1/10·1/4·1/2·3/4·전액 중 어느 하나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반드시 사전에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와 상담해 주십시오. 공사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 개호 보험의 주택 개수비 지급(상한 20만엔)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식사 서비스

혼자 사는 중증도 요개호자(요개호 2 이상 및 요개호1·요지원의 일부) 등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 가운데 식사에 관한 서비스 이용 조정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에게 영양의 균형이 잡힌 식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며, 아울러 안부를 확인합니다(1일 1식, 주 5일까지). 사업소별로 설정한 식재료비 등의 실비 상당액(700엔 이내. 단, 치료식인 경우는 700엔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을 본인 부담합니다.

※ 케어 매니저 및 지역 포괄 지원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에서 사전 상담(이용 조정)을 해야 합니다.

종이 기저귀 급부

생활보호 세대 또는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을 대상으로 요개호 1~5로 인정된 상태로 와상 상태 또는 치매 상태에 있으며 또한, 집에서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종이 기저귀를 급부합니다. 생활보호 세대 등은 무료, 시민세 비과세 세대는 10%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요개호도에 따라 이용 상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방문 이미용 서비스

요개호 4·5로 인정된 분 등으로 이·미용원에 가기 어려운 재택고령자에게 출장에 의한 이·미용 서비스(컷 한정, 본인 부담액은 1회당 2,000엔을 연 6회까지)를 실시합니다.

외출 지원 서비스

대략 만 65세 이상의 요개호3부터 5로 인정된 분으로, 혼자서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출이 어려우신 분 등에게 전용 차량으로 자택부터 의료 기관, 복지 시설 등의 구간을 송영합니다. 이용 거리에 따른 본인 부담(차량 보관용 장소를 기점으로 하여 2km까지 300엔, 이후 1km마다 150엔을 가산. 단 승차까지의 부담액은 차량 보관 장소로부터 2km를 초과한 경우라도 300엔이 상한)입니다.

문의: 각 구의 사회복지협의회

자립 지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만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 지원 쇼트 스테이

요코하마시의 피보험자로 요지원 또는 요개호로 인정되지 않은 약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개호자의 부재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혼자 살기 어려운 분이나 재택 생활을 계속하면 본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 등이 양호 노인홈 등에 단기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본인 부담은 이용료, 식비, 체류비입니다.
 ※시설에 의한 송영을 받은 경우는 송영 가산을 산정. ※생활보호 세대 대상인 분은 식비와 실비 이외는 무료.

가정 방문

건망증이 걱정되는 분이나 체력에 자신이 없고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 기분이 쉽게 가라앉는 분 등을 대상으로 보건사, 간호사, 관리 영양사, 치과 위생사가 자택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관한 조언 등을 합니다.

방문 치과 진료

치과 진료소 통원이 어려운 고령자분 등을 대상으로 요코하마시 치과 보건 의료센터 및 각 구 치과의사회의 치과 의사가 가정 방문에 의한 치과 진료(보험 진료)를 시행합니다. 또한 요코하마시 치과 보건 의료센터에서는 상기의 대상자 외에 입원 환자(시설 입소자), 재택 중증 심신 장애아(인)를 대상으로 방문에 의한 치과 진료(보험 진료)를 실시합니다.

문의 : 요코하마시 치과의사회 TEL.045-681-1553 또는 각 구의 고령·장애 지원과

치매 고령자에 대한 지원

치매 고령자 보건복지 상담(건망증 상담)

치매 고령자분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전문의, 사회 복지사, 보건사 등이 면접·방문을 통해 상담을 시행합니다.

요코하마시 치매 고령자 등 SOS 네트워크

치매 고령자분이 실종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발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종될 우려가 있는 치매 고령자분에 대한 본인 특징 등의 정보를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때 신분을 빠르게 특정할 수 있는 ‘보호 씬’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치매 콜 센터

치매 환자분과 그 가족 등의 각종 상담에 대해 치매 개호 경험자 및 전문가 등이 정신적인 면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전화 상담을 통해 실시합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지역 포괄 지원 기관 등으로 연결되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TEL.045-662-7833 화·목·금요일(오전 10시 ~ 오후 4시)(공휴일 포함. 연말연시 제외.)

요코하마시 치매 질환 의료 센터

보건 의료·개호 기관 등과 연계하면서 치매 질환에 관한 감별 진단, 주변 증상, 신체 합병증에 대한 급성기 치료, 전문 의료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병원명/주소	상담실명/전화번호	접수 시간 등
사이세이카이 요코하마시 동부 병원 쓰루미구 시모스에요시 3-6-1	요양 복지 상담실 045-576-3000 (대표)	월~금요일 9:00~17:00
요코하마 시립 미나토 적십자 병원 나카구 신야마시타 3-12-1	요양·복지 상담실 045-628-6761 (직통)	월~금요일 9:00~16:00
요코하마 호유 병원 아사히구 가네가야 644-1	지역 의료 연계실 045-360-8787 (직통)	월~토요일 9:00~17:00
요코하마 시립대학 부속 병원 가나자와구 후쿠우라 3-9	환자 서포트 센터 045-787-2852 (직통)	월~금요일 9:00~17:00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진료소 코호쿠구 도리야마초 1735	종합 상담실 04 5-475-0103 (직통)	월~금요일 8:45~17:30

병원명/주소	상담실명/전화번호	접수 시간 등
요코하마 종합 병원 아오바구 구로가네초 2201-5	지역 의료 종합 지원 센터 045-903-7106 (직통)	월~금요일 9:00~17:00
요코하마 마이오카 병원 도쓰카구 마이오카초 3482	의료 상담실 045-822-2169 (직통)	월~토요일 9:00~17:00
요코하마 사카에교사이 병원 사카에구 가쓰라초 132	환자 서포트 센터 045-891-2171 (대표)	월~금요일 9:00~17:00
요코하마 아이하라 병원 세야구 아쿠와미나미 2-3-12	치매 질환 의료 센터 045-270-8059 (직통)	월~금요일 9:00~17:00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한 지원

개호보험 서비스의 급부 대상이 되는 장애가 있는 분 가운데 개호보험에 없는 서비스 및 개호보험의 보험 급부보다 더 긴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시책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후천성 장애인 지역활동센터

대략 만40세~64세의 뇌혈관 질환 등의 후유증에 의한 재택 후천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 구의 후천성 장애인 지역 활동센터에서 ①재활치료 교실 사업, ②활동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① **재활치료 교실 사업**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 밖에 안 나가시는 분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분 등을 대상으로 기능 훈련 및 친구 만들기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활동센터 사업** 사회 참가를 위한 활동의 장이 필요한 분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창작 활동, 지역 교류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일은 평일입니다.

장애인 수첩 교부

장애 종별 및 정도에 따라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 수첩(사랑의 수첩), 정신 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이 교부되며,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 지원법 서비스의 제공

장애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재택 서비스)은 홈 헬프, 이동 개호, 단기 입소, 그룹 홈 등입니다.

고액 장애 복지 서비스 등 급부비

만 65세가 되기 전의 5년간에 걸쳐 특정 장애 복지서비스를 받고 계시던 분 가운데 현재 이용하시는 개호 보험 서비스 및 소득 상황, 장애 정도 등이 정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호 보험 서비스 이용분의 일부 혹은 전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1 명의 이용자가 개호 보험과 장애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경우나 동일 세대 내에 장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등에 신청하시면 이용자 부담의 합계액에서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 밖의 지원

쓰레기 반출 지원

수거 종류	후레아이 수거(가정 쓰레기 반출 수거)	대형 쓰레기 반출 수거
내용	대상자의 자택 부지 내 및 현관 앞에서 직접 가정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 수거 시에 쓰레기가 배출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에 인터폰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자택 부지 내 혹은 실내까지 들어가서 대형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또한, 대형 쓰레기 반출을 위해 다음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 수거 대상 외입니다. ①분해가 필요한 대형 쓰레기 ②다른 가구의 이동이 필요한 대형 쓰레기 ③반출 등으로 매달아 올리거나 내려야 하는 대형 쓰레기
신청방법	자원순환국 사무실에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서는 자원순환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택에 방문하는 등,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원순환국 사무실에 전화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사전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접수부터 수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거 희망일에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 및 가까운 사람의 협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직접 가정 쓰레기를 쓰레기 수거 장소까지 반출할 수 없는 ‘ 혼자 사시는 분 ’. 또한, 동거자가 있어도 동거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①신체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분 ②사랑의 수첩을 교부받은 분 ③정신 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을 교부받은 분 ④개호보험의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⑤쓰레기를 반출하기 곤란한 만 65세 이상인 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 및 가까운 사람의 협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직접 대형 쓰레기를 지정 장소까지 반출할 수 없는 ‘ 혼자 사시는 분 ’. 또한, 동거자가 있어도 동거자가 고령자나 연소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①신체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분 ②사랑의 수첩을 교부받은 분 ③정신 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을 교부받은 분 ④개호보험의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⑤쓰레기를 반출하기 곤란한 만 65세 이상인 분 ⑥임산부 및 부상을 당한 분 등으로 사업소장이 인정한 분(대형 쓰레기만 해당)

문의 : 거주하시는 구의 자원순환국 사무소 신청 : 접수시간 월~토(공휴일 포함) 오전 8:00~ 오후 4:45

우편 등을 통해 자택 등에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제도(2021년 3월 1일 현재)

요개호5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또한,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편 등 투표증명서를 교부받고 있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내 용 우편 등을 통해 자택 등에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 시에 투표일의 4일 전까지 우편 등 투표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에 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대리 기재인 1명(선거권을 갖춘 사람)에게 투표에 관한 기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우편 등을 통한 부재자 투표 대리 기재제도).

- ①신체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으시고 팔 또는 시각 장애의 정도가 1급인 분
- ②전상병자 수첩을 교부받으시고 팔 또는 시각 장애의 정도가 특별항증에서 제2항증까지인 분

문의 : 거주하시는 구의 선거관리위원회(구청 총무과 통계 선거계 내)

공공요금 · 세금 경감

소득세 · 주민세(시민세 · 현민세)의 개호보험 서비스 의료비 공제

특별 양호 노인홈 등의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한 분', '주택에서 방문 간호 등의 의료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 '의료계 서비스와 함께 홈 헬프 및 데이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분'의 이용자 부담액 일부는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의 사항

-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발행하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 공제액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경우는 고액 개호 서비스비 및 고액 의료 합산 개호 서비스비에서 환급을 받은 부분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특별 양호 노인홈 입소에 드는 본인 부담에 대한 고액 개호 서비스비는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1/2 상당을 차감합니다.
- 본래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서비스라도 개호 복지사 등에 의한 가래 흡인 등이 시행되는 경우, 본인 부담액의 1/10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종합사업의 방문 개호 상당 서비스, 통소 개호 상당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문의 :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세무서

고령자의 소득세 · 주민세(시민세 · 현민세)의 장애인 공제

신체장애인 수첩 등을 교부받은 분 외에 만 65세 이상이며 다음 ①~⑦에 해당하시는 분은 복지보건센터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분	장애인 공제	특별 장애인 공제
대상자	①신체 장애인(3~6급)에 준하는 분 ②치매(경도 · 중도)에 준하는 분 ③지적 장애인(경도 · 중도)에 준하는 분	④신체 장애인(1 또는 2급)에 준하는 분 ⑤치매(중증)에 준하는 분 ⑥지적 장애인(중증)에 준하는 분 ⑦6개월 정도 이상 외상 상태로 식사·배출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소득세 공제액	소득 금액에서 27만엔	소득 금액에서 40만엔
시민세·현민세의 공제액	소득 금액에서 26만엔	소득 금액에서 30만엔

※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그 밖의 친족 중 어느 한 분과 항상 동거하고 있는 특별 장애인인 경우는 공제액이 소득세 75만엔, 주민세 53만엔이 됩니다.

문의 :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세무서(소득세),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주민세), 고령 · 장애 지원과(인정)

배리어 프리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 대한 세금 감액

요개호 또는 요지원으로 인정된 분 및 장애가 있는 분이 배리어 프리 개수 공사를 한 경우에 고정 자산세, 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 자산세 감액) 일정 배리어 프리 개수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면 고정 자산세가 감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세무과에서 배포하고 있는 홍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 :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

(소득세 특별 공제) 소득세의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세무서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 세대 : 생활 보호 세대, 특정 중국 잔류 일본인 세대, 신체장애 1급 또는 2급 · 정신장애 1급 · 지적장애 A1 또는 A2 · 중복장애 (신체장애 3급이며 지적장애 B1) 인정을 받은 분이 속한 세대, 복지 의료중 교부를 받은 한부모 세대, 개호보험 요개호 4 또는 5 인정을 받은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속한 세대, 대형 쓰레기를 직접 반출하기 어려운 만 70세 이상의 독거 고령자분 가운데 복지보건센터장이 인정한 분

감면내용 : 연간※4개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신청 :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 TEL.0570-200-530 (일반 가입 전화 등에서)
TEL.045-330-3953 (휴대 전화와 IP 전화 등의 정액제 및 통화료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

접수 시간 : 월~토요일(연말연시 제외, 공휴일 포함) 오전 8:30~오후 5:00

수도 요금 ·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주택에서 요개호4 또는 5로 인정된 분이 있는 세대는 수도국에 감면 신청을 하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기본요금 상당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대상 세대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문의 : 수도국 고객 서비스센터 TEL.045-847-6262 FAX.045-848-4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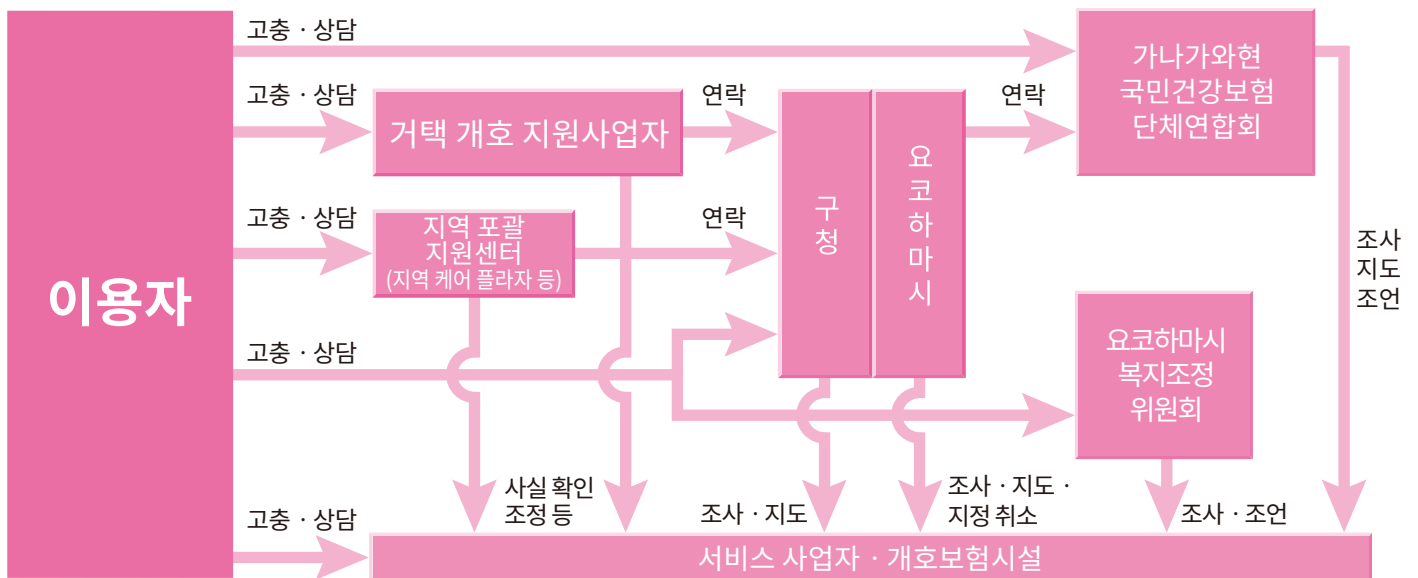
고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에 불편 및 불만이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하거나 고충을 신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상담은 가까운 창구로

- 각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먼저 그 사업자의 상담 창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사업자는 고충이 발생한 경우는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케어 플랜을 작성한 거택 개호 지원사업자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거택 개호 지원사업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선 요청을 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조정을 합니다.
- 또한 지역 케어 플라자 등의 지역 포괄 지원센터 및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 창구에서도 고충·상담에 대응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고충 대응(요코하마시)



2 고충 신고방법

- 상기의 상담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또는 필요에 따라 가나가와현 국민건강보험 단체연합회에 '고충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령에 따른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 가나가와현 국민건강보험 단체연합회 개호보험과 개호고충상담계
TEL. 045-329-3447
전국공통번호 0570-022-110

- 요코하마시에서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인 '요코하마시 복지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요코하마시의 복지 보건의 서비스에 관한 시민의 고충 상담을 받고 필요한 조사·조정을 실시하여 복지 보건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합니다.

문의 요코하마시 복지조정위원회 사무국(건강복지국 상담조정과)
TEL. 045-671-4045 FAX. 045-681-5457

■ **각 구의 고령·장애 지원과** 요개호 인정·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구	전화번호	FAX번호
쓰루미	045-510-1770	045-510-1897
가나가와	045-411-7019	045-324-3702
니시	045-320-8491	045-290-3422
나카	045-224-8163	045-222-7719
미나미	045-341-1138	045-341-1144
고난	045-847-8495	045-845-9809
호도가야	045-334-6394	045-334-6393
아사히	045-954-6061	045-955-2675
이소고	045-750-2494	045-750-2540

구	전화번호	FAX번호
가나자와	045-788-7868	045-786-8872
고호쿠	045-540-2325	045-540-2396
미도리	045-930-2315	045-930-2310
아오바	045-978-2479	045-978-2427
츠즈키	045-948-2313	045-948-2490
도쓰카	045-866-8452	045-881-1755
사카에	045-894-8547	045-893-3083
이즈미	045-800-2436	045-800-2513
세야	045-367-5714	045-364-2346

■ **각 구의 보험연금과** 피보험자 자격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구	전화번호	FAX번호
쓰루미	045-510-1807	045-510-1898
가나가와	045-411-7124	045-322-1979
니시	045-320-8425	045-322-2183
나카	045-224-8315	045-224-8309
미나미	045-341-1126	045-341-1131
고난	045-847-8425	045-845-8413
호도가야	045-334-6335	045-334-6334
아사히	045-954-6134	045-954-5784
이소고	045-750-2425	045-750-2545

구	전화번호	FAX번호
가나자와	045-788-7835	045-788-0328
고호쿠	045-540-2349	045-540-2355
미도리	045-930-2341	045-930-2347
아오바	045-978-2336	045-978-2417
츠즈키	045-948-2334	045-948-2339
도쓰카	045-866-8449	045-871-5809
사카에	045-894-8425	045-895-0115
이즈미	045-800-2425	045-800-2512
세야	045-367-5725	045-362-2420

■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과	전화번호	FAX번호	
개호보험과	045-671-4252	045-550-3614	개호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045-671-4256	045-550-3614	요개호 인정에 관한 사항
	045-671-4253	045-550-3614	피보험자 자격에 관한 사항
	045-671-4254	045-550-3614	보험료에 관한 사항
	045-671-4255	045-550-3614	보험 급부에 관한 사항
개호사업지도과	045-671-3413	045-550-3615	거택 서비스 사업소 지정·갱신에 관한 사항
	045-671-3466	045-550-3615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 지정·갱신에 관한 사항
	045-671-3414	045-550-3615	
	045-671-2356	045-550-3615	거택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 감사·지도에 관한 사항
	045-671-3461	045-550-3615	
고령시설과	045-671-3923	045-641-6408	개호 예방에 관한 사항
고령재택지원과	045-671-2405	045-550-3612	개호 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포괄케어추진과	045-671-3464	045-550-4096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관한 사항
고령건강복지과	045-671-3412	045-550-3613	요코하마 지역 포괄 케어 계획에 관한 사항

고령자 여러분을 위한 개호 예방 · 건강 증진 서비스

GoGo 건강! 라이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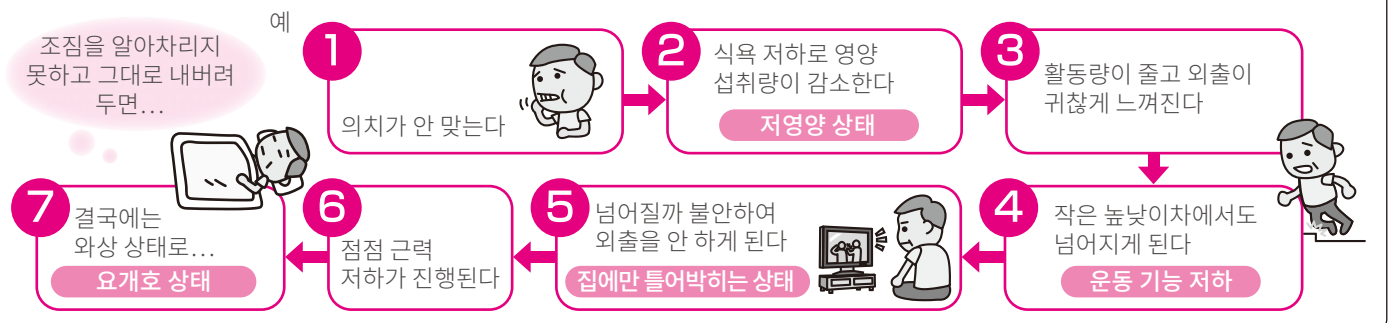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고 생기 있게 자신다운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게 누구나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심신 상태에서도 자신답게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 증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메이커즈 라이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단련(운동)하세요!**
 고령기가 되어도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 만보기를 착용하고 걷기 등 1일 30분을 기준으로 시작해 보세요.
- 건강** **구강 기능을 유지하세요!**
 어금니의 맞물림은 음식을 씹어 으개는 역할 외에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도 합니다.
 ● 잘 씹어 먹는 습관을 몸에 익히세요. ● 양치와 입 체조(근육 운동)를 계속하세요.
 ● 의치의 손질이나 조정 등 정기적인 치과 진찰을 받으세요.
- 영양**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을 줄이지 않는 식사를 하세요!**
 나이가 들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내장이나 혈액을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저영양 상태가 되어 체중 감소와 피로로 이어지면서 여러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 1일 3회, 메인 요리(고기 · 생선 · 콩 가공제품 등)와 곁들임 요리(채소)를 섭취하세요.
 ●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세요. (심장이나 신장 등에 질환이 있는 분은 주치의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운동 습관의 정착이나 영양 개선,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뇌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 건망증이 걱정되는 분은 먼저 주치의에게 상담해 보세요.
- 건강관리** **올바른 복약 및 생활 습관 개선 등으로 질병을 컨트롤합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비만 등은 동맥경화를 일으켜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세요. ●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세요.
 ● 운동이나 식사 등의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회참여** **지역 행사나 취미 모임 등에 참가하세요!**
 스포츠 동아리나 취미 모임에 자주 참가하는 사람은 요개호 인정의 발생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 겐지쿠리 스테이션 등의 개호 예방 그룹에 참가하세요.
 ● 취미 모임이나 지역 살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세요.

칼럼 폐용증후군이 가져오는 '악순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짐을 알아보세요

와상 상태 등 중증의 요개호 상태가 되는 계기는 '의치가 안 맞는다',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다'라는 대수롭지 않은 일부부터입니다. 이런 조짐을 미리 알아차리시고 건강 증진(개호 예방)을 위해 노력해 보세요!



사회 참여가 개호 예방의 요령!
자기 스타일에 맞는 개호 예방 · 건강 증진을 찾아보세요!

● **친구들과 왁자지껄형**

혼자서 꾸준히 못 하는 사람은 친구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미소로 삶의 보람형**

지식 및 특기를 활용해서 지역에 공헌하고 싶은 분은 지역 안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추천합니다.

친구들과 활동하는 '겐키즈쿠리 스테이션' 소개

가까운 곳에서 친구와 함께 개호 예방·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그룹 활동입니다. 시내에서 300개 이상의 그룹이 체조, 근력 운동, 걷기, 코그니사이즈, 3A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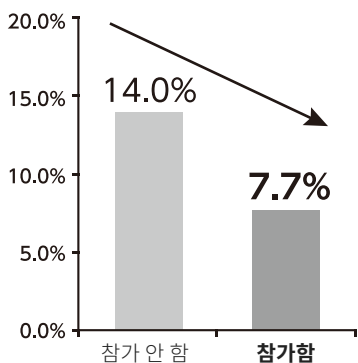
문의: 거주하시는 구청 고령 · 장애 지원과, 지역 포괄 지원센터

관계는 건강하게 사는 비결!

취미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등,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지역 활동은 지역의 힘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살롱 참가자는 요지원 · 요개호 인정자가 되는 비율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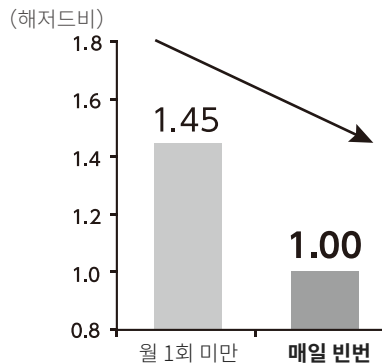
살롱 참가자와 비 참가자의 요개호 인정률 비교



※ 아이치현 다케토요초에서 2007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코이노 살롱'에서 참가자의 상황을 2012년 3월까지 추적 조사. 3회 이상 참가한 사람만을 '참가함'으로 하고 0~2회 참가자는 '참가 안 함'으로 분류한 결과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

동거인 이외 다른 사람과의 교류 빈도별 치매 동반한 인정자가 될 확률 ('매일 빈번'을 1.00으로 한 경우)



※ 아이치현 내 6곳의 시초손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14,804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약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성별, 나이, 세대 구성, 취학 연수, 혼인 상태, 등가 소득, 치료 질환의 유무, 건강증의 유무, 거주 지역을 조사한 결과

취미가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2.2배라는 데이터도

출전:일본 노년학적 평가 연구 자료

최근 1년간의 개인·단체 지역 활동 참여 상황 (2019년도 요코하마시 고령자 실태 조사)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

47.4%

건강·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

21.1%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

38.8%